

제405회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1 호

국회사무처

일 시 2023년4월25일(화)

장 소 정무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20)
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71)
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21)
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4)
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80)
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10)
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92)
8.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91)
9. 가상자산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35)
10. 가상자산법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90)
11.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12)
12.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59)
13.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71)
14.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6)
15.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68)
16. 디지털자산거래법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64)
17.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94)
18.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04)
1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90)
2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47)
2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60)
2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71)
2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2)
2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19)
2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01)
26. 암호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72)
27.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02)
2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41)
2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2)

3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47)
3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14)
3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37)
3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34)
3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78)
35.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931)
3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90)
37.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3)
3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76)
3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61)
4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98)
4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8)
4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3)
4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2)
4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2)
4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66)
4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43)
47.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25)
4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19)
4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45)
5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80)
5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90)
5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5)
5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770)
54.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27)
5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069)
5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2)
5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41)
5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60)
5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1)
6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9)
6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4)
6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4)
6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4)
6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17)
6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6)
6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24)
6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0)
6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1)
6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8)
70.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80)
7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21)
7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48)
73.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12)

74.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48)
75.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86)
76. 순직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82)
77. 순직 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93)
78.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86)
7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51)
8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81)
8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13)
8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644)
8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37)
8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53)
8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22)
8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4)
8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70)
8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94)
8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14)
9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4)
9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8)
9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2)
9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16)
9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81)
9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47)
9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97)
9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28)

상정된 안건

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20) 5
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71) 5
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21) 5
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4) 5
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80) 5
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10) 5
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92) 5
8.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91) 5
9.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35) 6
10.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90) 6
11.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12) 6
12.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59) 6
13.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71) 6
14.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6) 6
15.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68) 6
16. 디지털자산거래법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64) 6
17.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94)	6
18.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04)	6
1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90)	6
2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47)	6
2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60)	6
2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71)	6
2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2)	6
2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19)	6
2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01)	6
26. 암호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72)	6
27.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02)	6
2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41)	6
2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2)	6
3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47)	6
3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14)	6
3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37)	6
3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34)	6
3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78)	6
35.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931)	6
3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90)	6
37.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3)	6
3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76)	6
3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61)	6
4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98)	6
4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8)	6
4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3)	6
4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2)	6
4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2)	6
4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66)	6
4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43)	6
47.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25)	6
4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19)	6
4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45)	6
5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80)	6
5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90)	6
5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5)	7
5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770)	7
54.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27)	7
5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069)	7
5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2)	7
5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41)	7
5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60)	7

5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1)	7
6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9)	7
6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4)	7
6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4)	7
6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4)	7
6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17)	7
6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6)	7
6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24)	7
6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0)	7
6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1)	7
6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8)	7
70.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80) ...	7
7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21)	7
7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48)	7

(10시28분 개의)

○소위원장 김종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금융위원회 소관 72건의 법률안, 국가보훈처 소관 25건의 법률안 등 총 97건입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한 다음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으니 언론인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회의장에서 발언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예, 의사진행발언이요.

○이용우 위원 법안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게 아마 가상자산법 관련 법안인 것 같은데 논의할 것도 좀 있고 하니까 우선 가상자산법부터 심의하고, 순서를 좀 바꿔서 하는 게 어떨까 제안합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가상자산법안을 먼저 하는

것으로 괜찮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 없으시면…… 지금 준비돼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예.

○유의동 위원 그런데 이것 가상자산법을 오늘 다 마무리지을 수 있어요?

○소위원장 김종민 오늘 뭐 특별하게, 지난번에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거니까 그것 확인해 보고 오늘 제가 추가로 한 항목 정도 더 제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견이 있으면 빼고 이견 없으시면 그냥 합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20)
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71)
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21)
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4)
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80)
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10)
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92)
8.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91)

9.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35)
10.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90)
11.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12)
12.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59)
13.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71)
14.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6)
15.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68)
16. 디지털자산거래법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64)
17.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94)
18.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04)
1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90)
2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47)
2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60)
2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71)
2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2)
2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19)
2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01)
26. 암호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72)
27.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02)
2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41)
2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2)
3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47)
3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14)
3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37)
3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34)
3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78)
35.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931)
3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90)
37.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3)
3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76)
3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61)
4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98)
4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8)
4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3)
4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2)
4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2)
4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66)
4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43)
47.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25)
4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19)
4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45)
5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80)
5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90)

5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5)
5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770)
54.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27)
5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119069)
5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2)
5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4641)
5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5860)
5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6021)
6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6439)
6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6564)
6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6674)
6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6734)
6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6817)
6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9366)
6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9424)
6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1160)
6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1)
6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8)
70.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80)
7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21)
7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48)

(10시30분)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2항까지 이상 7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합의대로 의사일정 제9항부
터 제27항까지 이상 19건의 가상자산 관련 법률
안을 일괄하여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
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지난 소위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1쪽입니다.

지난 3월 28일 날 소위 1차 심의가 있었고요,
그때 통합 의견 제시해서 대부분 합의를 하였습
니다. 그래서 합의사항 표로 요약해 왔습니다.

2쪽 보시면 그때 추가로 논의할 사항 문제 제
기가 있었습니다. 한 8개 정도 되는데요 사항별
로 하나씩 보고드리고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
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 목적 관련해서 법률의 목적에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를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입장 들으
시고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항목별로 할까요?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예, 그러셔야 할 것 같
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그렇게 합시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입법정책적 판단
이라는 점에서 해당 문구에 포함·미포함 모두에
대해서 수용 가능한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위원님들 의견 얘기해 주세
요.

○이용우 위원 제가 의견 제시를 했는데요. 이
게 보통 은행업법이나 보험업법 같은 경우나 업
법을 이야기할 때는 ‘국민경제 발전’이나 이런 구
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나 이런 통제 관련 법에서는 이 구절들이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상자산업법을 이야기를 하면
서 업법 전체를 이야기하지 않고 2단계로 나누어
서 규제와 불공정거래를 했기 때문에 굳이 이 구
절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한
건데요. 이것은 위원님들 판단에 따라서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한홍 위원** 저는 이용우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게 불공정거래 방지라든지 피해자 구제에 초점이 있는 거지 이런 거시적인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닌가. 나는 이용우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성주 위원** 저도 포함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그러면 구체적인 조문은 자료 하단 우측에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가상자산 정의와 관련해서 정의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와 관련된 서비스를 명시적으로 제외할지 여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금융위·한국은행 의견이 있고요, 법제처에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내왔고, 금감원에서는 굳이 제외할 필요성이 없다는 그런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금융위원회하고 한국은행 의견 들으시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의견 얘기해 주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국제적으로 CBDC와 가상자산을 구분하고 있고 CBDC가 가상자산 관련 법률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정의가 이미 다르기 때문에 굳이 포함이 될 필요가 있나 하는 측면과 또 CBDC 자체가 아직 도입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입이 안 돼 있고 도입하겠다는 것도 명확히 발표가 안 된 상황에서 당장 법안에 넣는 게 적절한지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CBDC가 확정이 되면 한국은행법에 추가하거나 2단계에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부총재보 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 이종렬입니다.

저희 한국은행에서는 사실 여기 지금 저희가 서면으로 의견드린 대로 명시적으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야지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도입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연구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가상환경에서 모의실험도 했지만 작년 하반기에는 금융기관과 연계 실험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실제 환경에서도 구현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여기 가상자산법에서 CBDC가 제외되지 않는다면 그런 실험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이번 법안에, 가상자산에서 CBDC가 제외되는 것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의동 위원** 제가 얘기해도 되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종민** 예.

○**유의동 위원** 금융위원회하고 한국은행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 CBDC가 도입이 된 이후에 고민을 해도 그리고 체계 정합성이나 그걸 그때 따져도 늦지 않다, 지금은 우리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미리 예단해서 CBDC가 어떤 형태로 등장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한국은행 입장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위원님들 의견 얘기해 주세요.

○**유의동 위원** 명시적으로 일차적으로 제외하자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김종민**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거예요.

○**유의동 위원** 그런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다음에 개정 요구가 있거나 사안이 있으면, 소요가 있으면 그때 후속을 시켜도 되는 거니까.

○**소위원장 김종민** 예, 그때 포함시키면 되는 거니까.

○**박용진 위원** 아니, 거꾸로 해도 마찬가지로 아닌가? 여기에 지금 CBDC가 명시적으로 포함된다고 하지 않은 상태인데 있지도 않은 것을 빼자고 미리 얘기하는 것도 웃긴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김종민** 아니, 여지가 있으니까.

○**박용진 위원** 아니, 그건 여지이지. 있지도 않은데 무슨 여지가 있어.

○**소위원장 김종민** 나중에 논란이 될 수 있잖아.

○**한국은행부총재보 이종렬** 아니, 저희도 입장을 바꾼 게 아니고요. 명시적으로 제외해야 된다는 것을 넣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박용진 위원**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걸 어떻게 제외를 해요?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아니, 그런데 저희가 한

국은행에서 의견을 공식적으로 받기로는 여기 자료에 표시한 바와 같이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게 원래 입장인데 2단계 입법 추진 시에 반영해도 상관없다 그런 입장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한국은행부총재보 이종렬** 가급적이면 이번에 반영시키기를 저희가 희망한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이번에 반영이 안 된다면 2단계에서는 꼭 반영시켜 달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용진 위원** 가상자산 관련해서 2017년, 2016년 이때 처음 법안 내면서 할 때 이걸 가상자산으로 부를 건지 암호화폐로 부를 건지 이런 등등에 대한 합의 전반 자체가 안 돼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것 지금 합의했다고까지도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한국은행이 말씀하시는 건 좀 지나친 거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을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발행하려고 하는 CBDC가 포함될 여지가 있으니 아예 관계없다고 빼 달라고 하는 건 좀 무리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있고 나서 아까 유의동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절차를 거꾸로, 사실 거꾸로 보고 이게 나오게 되면 빼는 문제는 나중에 우리 법안을 다시 만들어서 개정해 가지고 하면 될 문제인데 오히려 전체 규정, 처음으로 이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것을 가상자산이라고 부르고 이걸 이렇게 규정하겠다고 하는데 너는 빼고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오히려 애매할 수 있어요.

○**소위원장 김종민**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제가 확인 하나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미카(MiCA) 가상자산에 대해서, MiCA와 같은 경우에 현재 CBDC를 명백하게 적용 배제하고 있지요?

○**한국은행부총재보 이종렬** 예, 그렇습니다.

○**이용우 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2017년, 18년 이후부터 논의가 진전돼서 미카에서 뺀 거고 혹시라도 서로 간에 중복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의상 빼는 게 맞기는 한데, 법에서도 아예 논란의 소지를 좀 배제하기 위해서 빼는 게 어떨까 이런 얘기가 제가 지난번 첫 번째 이야기고 그리고 뺐다가도 나중에 그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그 조항을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한국은행이

2단계에서 해도 좋은데 지금 하는 게 더 좋겠다고 하면 금융위에서 특별한 반대가 없다면 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빼는 게 뭐예요? 뭘 뺄다는 거예요?

○**이용우 위원** 적용 배제.

○**김성주 위원** 명시적으로 CBDC는 아니라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종민** 명시하자는 거지? 명시하자는 의견이었고. 또?

○**김성주 위원** 아니, 같은 주장만 하시지 말고 다른 의견을 좀 얘기하고 난 다음에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하여간 박용진 위원은 이 조항을 집어넣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고, 이용우 위원님은 명시 배제 조항을 집어넣자는 의견이고, 유의동 위원님은 집어넣자는 의견이고.

○**유의동 위원** 예. 그래서 한국은행에, 지금 박용진 위원님 주장도 일리가 있는데 그랬을 때 생길 수 있는 혼선 오해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례가 뭔지를 저희가 들으면 훨씬 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한국은행부총재보 이종렬** 지금 우리가 작년 하반기 때 은행들하고 연계 실험을 하기는 했는데요. 앞으로 실제 환경에서 내년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하는 그런 실험을 할 텐데 거기에 들어오는 사업자들이 과연 자기가 CBDC 사업을 하는데 이게 가상자산업법의 규제를 받는 내용인지 아닌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아예 여지를 없애 주기 위해서는 명시적으로 제외한다는 것을 이 가상자산법에 좀 반영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윤한홍 위원님.

○**윤한홍 위원** 질문 좀 해도 될까요? 여기 자료를 보면 한국은행 의견에는, 중간 내용을 보면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을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있어 CBDC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해 냈거든요. 한국은행은 그렇게 해 냈지요?

그런데 금감원 의견을 보면 CBDC가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두 기관의 의견이 달라요. CBDC가 가상

자산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이견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은 명시적으로 법문에서 빼자 했고 금감원은 필요성이 낮다 이렇게 지금 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한번 쥌 보세요.

CBDC가 가상자산에 포함되니까, 안 됩니까?

○**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 박민우** 포함이 안 되고요. 안 된다는……

○**윤한홍 위원** 안 되는데 한국은행은 포함된다고 지금 자료를 냈고.

○**소위원장 김종민** 이 문안이 그럴 여지가 있다는 거지요.

○**윤한홍 위원**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지.

○**한국은행부총재보 이종렬** 예,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고……

○**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 박민우** 안 된다고 하는 건, CBDC는 화폐입니다. 디지털 형태의 법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이 아니라는 거고요.

○**윤한홍 위원** 그러니까 CBDC가 가상자산이 아니라면 이걸 배제한다는 내용을 법문으로 명문화하는 것도 별 큰 실익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논쟁하는 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는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다수 의견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이용우 위원** 제가 한 가지, 실제로 해 보면 베타 테스트를, 이런 것은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테스트를 하려고 하면 실거래 환경에서 실질 거래가 일어나야 됩니다, 실제로 보면. 그런데 실질 거래가 일어날 때 그게 실제로 CBDC를 테스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 이게 CBDC냐 아니냐라고 하는 게 약간 회색지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지금 가상 테스트를 할 때는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실제 은행 테스트를 하려고 하면 실거래로 돈이 왔다 갔다 할 상황으로 해서 이게 은행으로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한국은행에서 테스트 환경, 실거래 테스트 때문에 그렇게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윤창현 위원** 저도 의견을……

○**소위원장 김종민** 김성주 위원님 하시고 윤창현 위원님.

○**김성주 위원** 아무튼 법을 만들 때는 간명성 명확성 이런 원칙들이 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안의 자구 하나하나의 해석을 둘러싸고 여러 다양한 논란이 생길 수 있으니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CBDC가 가상자산이 아님을 좀 표시하자고 하는 게 수정의견이신데요.

제가 한번 금융위하고 한국은행에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이 발행 예정으로 돼 있는 CBDC를 가상자산으로 분류합니까 안 합니까?

○**한국은행부총재보 이종렬**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얘기했다시피 가상자산은 아닙니다.

○**김성주 위원** 거기까지만 확인하세요. 아닌 거지요? 한국은행이 보기에 가상자산이 아닌 거지요?

금융위는 어떻게 봅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가상자산 아니라고 봅니다.

○**김성주 위원** 가상자산 아닌 거지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CBDC가 가상자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게 인식될 수 있으니 명시적으로 넣어서 제외하자, 앞으로 생길 가능성에 대비해서 그러는데.

아니, 우리가 다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하는데 굳이 그럴 가능성을 상정해서 이것은 가상자산이 아니야라고 법안에 기술하는 게 무슨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고 그렇다고 하면 또 다른, 가상자산이냐 아니냐 논란이 되는 것도 계속 단서 조건을 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법이 굉장히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모두 다 같이 이게 아니라고 하는데 굳이 그걸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사족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만약에 그런 우려가 생긴다면 추가 입법을 통해서 반영해도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그런데 이것을……

○**윤창현 위원** 저도 좀……

○**소위원장 김종민** 잠깐만요.

위원님들 얘기하실 때 지금 김성주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논리만 가지고는 약간 논쟁이 마무리가 안 될 수 있는 게 지금 한국은행이 문제 제기하는 얘기의 초점은 가상자산의 특금법상 정의 문언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아니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합의가 돼서 이것은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문언이, ‘뭘뭘뭘 하는 전자적 증표’라는 이 문언 정의가 여지가 있는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이 의견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 문언 정의가 그런 여지가 있다면 배제 조항을 넣는 것도 일리가 있는 거니까요.

○**윤창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그 건데요.

여기 보면 MiCA 2조가 ‘이 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인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배제로 갔어요. 그러면 우리도 비슷하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법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 통화신용정책 수행 기관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서 배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정의로 가지 말고. 그러면 문제가 사라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MiCA 2조 같은 것을 집어넣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그걸 어디다 집어넣지요?

○**윤창현 위원** 그러니까 어디다 집어넣으면 되나……

○**소위원장 김종민** 일단 이 의견을 가지고 한번 의견 주세요, 내용적으로는 같은 의견이니까.

○**윤창현 위원** 적용 배제로 가면 되지요.

○**유의동 위원** 윤창현 위원님 의견이 일견 좀 더 합리적인 의견 같고요.

김성주 위원님 아까 말씀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첨언을 하자면, 이게 사족이 될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CBDC가 만들어져서 나오면 그것은 가상자산일 수가 없지요, 법정 화폐니까.

그런데 법정 화폐로 공인받기 전에 테스트하고, 실물 거래로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 또 거기에서 생길 수 있는 장애 이런 것을 우려하는 것 아니에요, 한국은행은.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반드시 필요한 조건인데 그것이 윤창현 위원님 의견대로 배제의 형태로 간다면 그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기관을 적용 제의를 시켜 버리면, 그와 관련된 서비스도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보면. 그게 배제

가 안 돼서.

지금 MiCA 전문에도 보면 2조 범위에도 있지만 7항에 보면 중앙은행 화폐하고 암호자산은 제외한다는 식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기관을 적용 제외시키는 것보다는 이 원안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관을 적용 제외시켰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지금 저희가 검토가 전혀 안 되어 있어 가지고요.

○**소위원장 김종민** 그럴 수도 있겠네요.

○**윤창현 위원** 한국은행을 제외한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복잡해요?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창현 위원** 이 법에서 한국은행은 제외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소위원장 김종민** 일단 결론을 내리지요.

일단 위원님들이 다수설은 명시 배제를 넣자는 게 약간 많은 것 같아요, 숫자가. 어떻습니까?

○**박용진 위원** 아니, 하나만.

아까 유의동 위원님이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한국은행 부총재보님.

실익이 어떤 거예요? 그것만 분명하게 설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명시 배제하면……

○**한국은행부총재보 이종렬** 명시 제의를 하느냐 아니면 기관 제의를 하느냐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박용진 위원** 아니, 그 실익이 뭐냐고요? 한국은행이 배제하게 됐을 때?

○**윤한홍 위원** 법문에 명시적으로 배제 조항을 넣자는 실익이 뭐냐는 거지요.

○**한국은행부총재보 이종렬** 그런데 저희가 명시적으로 제외해 달라고 자꾸 요구하는 게, 사실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는 게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이 제외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문 자체가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포괄하면서 이런 것 이런 것 제외시키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CBDC도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는……

○**오기형 위원** 선례가 아니라 실익이 뭔지를……

○**박용진 위원** 실익이 뭐냐고요?

○**한국은행부총재보 이종렬** 실익은 당장 우리가 연계 실험이라든지 연구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만약에 포함된다면 사업자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을 수 있다, 당장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용진 위원 어떤 곤란이지요?

○이용우 위원 내가 예시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박용진 위원 아니, 한국은행 잠깐 얘기 좀 들어 보세요.

○한국은행부총재보 이종렬 CBDC 참여를 하는 사업자들이 이게 가상자산 사업인지, 가상자산 사업이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가상자산법법의 여러 가지 규제 대상이 되니까 그것을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사실 한국은행도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중앙은행이 CBDC 직접 발행은 하지만 연계돼서 하는 사업들이 짝 깔려 있거든요. 그 사업자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의동 위원 그런데 막연하다.

○이용우 위원 제가 설명을 하나 예시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카카오텔크를 설립할 때 예비인가를 받고 본인가를 받았습니다. 오픈한 것은 7월 달이었는데 본인가 해서 5월 달부터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 서비스는 직원들하고 관계사하고 서비스를 하는데 그 서비스를 은행 본인가를 받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주고받고 송금하고 이체하는 과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돈이 오가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ICT 같은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실패스트할 때 데이터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금융 쪽에서는 돈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 CBDC 테스트로 들어올 때 이 사람들이 실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인가사항에서 보면 가상자산의 규제를 받을까 안 받을까 할 때 자기들 해석의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실거래 테스트하는 데 시간을 확보하는데 장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한국은행부총재보 이종렬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면 박용진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일단 명시 배제를 집어넣어도 큰 부작용은 없잖아요. 약간 거추장스럽다 또는 가일수다 이런 느낌은 있지만 이게 큰 문제 발생 소지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성주 위원 여기는 왜 빼?

○윤한홍 위원 나는 다수결에 따르겠다고 했어요.

○소위원장 김종민 그런데 대세에 지장은 없어.

○박용진 위원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MiCA가 얘기하는 이 방식대로 2조 범위를 하는 기관으로 하지 말자는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에서는 지금 기관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한국은행에 대해서.

○소위원장 김종민 그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요?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예, 원안대로 그렇게 제외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용진 위원 CBDC만 딱 정해서.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예, CBDC와 그 관련된 서비스.

○박용진 위원 그 조문을 해야 되겠는데.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면 일단 두 분 양해를 전제로 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이 문안 최종 정리되면 우리 오늘 의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다음.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다음, 자료 6쪽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본시장법상 증권 성격의 갖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내용을 이 법안에 명시적으로 규정할지 여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할 경우 그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조항에 따라 특별히 명시하지 않아도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가상자산 정의에서 증권성 가상자산을 배제하는 경우 오히려 이용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증권에 대한 별도의 적용 배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윤창현 위원 금융위원회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번.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다음, 12쪽입니다.

김희곤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셨던 부분인데요.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중에서 양경숙·권은희 의원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기록의 생성·

보관에 관한 사항도 반영하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이용자 보호 등 측면에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일정 기간 보관 하도록 하는 조항 추가에 동의합니다.

생성·보관의 대상은 중앙집중화된 개별 가상 자산사업자의 거래기록이므로 분산원장 기록과 별도로 생성·보관 가능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현행 특금법은 금융거래 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5년 이상 특금법상 신고 의무의 이행과 관련된 거래기록에 한하여 보존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서 일반적인 거래기록 보관 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추가함이 바람직합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이용우 위원** 제가 지난번에 논의를 했었는데 약간 착각을 했던 게 있었는데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거래기록을 생성·보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래기록을 생성·보관하는 데 5년이 아니고 대부분이 탈세와 세금 납부 여부, 국제 그다음에 자금세탁 이런 부분을 증빙하기 때문에 과세에서 제척되는 게 아마 최장 기간이 15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목적에 대해서 국제법이나 이런 쪽에 관련해 가지고 기록을 보관해야 된다는 것은 필요할 것 같고요. 5년은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용우 위원** 15년이 맞다고……

○**소위원장 김종민** 의견 얘기해 주세요.

○**유의동 위원** 혹시 금융위 의견은 몇 년이 있어요, 생각해 보신 게?

○**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 박민우** 저희는 과세 목적과 관련해서는, 국제법에 따라서 당연히 15년을 보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적용이 될 거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그 자체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원래 양경숙 의원안에는 그냥 5년간만 했는데 기산점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래 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5년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우 위원** 제가 15년을 얘기했던 건 상속·증여세의 과세 기간이 15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상자산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5년을

이야기한 겁니다.

○**윤한홍 위원** 동의합니다.

○**유의동 위원**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재호 위원** 의견 없으면 그대로 갑시다.

○**소위원장 김종민** 예, 15년?

○**오기형 위원** 체크 한 번 더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5년에 대해서는. 원래 장부 하는 것의 5년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세금 문제, 법인세 관련 5년 시효 때문에 5년으로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아직 체크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15년은 통상적이지 않은 수치여서 어떤 것인지 약간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 최종 입장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견보다는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15년이 되게 이해적이어서 그렇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유의동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문을 주세요, 뭐를 체크하라고 하는지.

○**오기형 위원** 이른바 이게 법적으로 어떤 시효의 의미가 있을 때 그 기간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막 하는 것은 아니어서 15년의 근거를 확인해 보시라. 그래야만 여기서 제도적 일관성이 있다 이야기지.

○**유의동 위원** 이용우 위원님이 15년이라고 하셨어요.

○**이용우 위원** 그리고 이것 때문에 상법도 15년으로 지금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가상자산의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거래를 통해서 자금세탁 하면서 상속·증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과세 자료를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거래소 입장에서는 전산을 그 정도는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15년을 이야기했고요. 상법 개정안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15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15년 시효가 정확히 뭐라고요?

○**이용우 위원** 상속세·증여세의 과세 제척……

○**소위원장 김종민** 아, 상속·증여세.

○**박재호 위원** 이게 올라가 있는, 지금 현재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상법상 10년입니다.

○**박재호 위원** 10년이지요? 지금 현재 10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15년으로 올린다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 10년으로 하고……

○소위원장 김종민 그건 조금 복잡하네, 지금 현재 10년이면.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그 부분은 이따가, 박용진·이용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금융실명거래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개정사항이 있거든요. 그때 한번 같이 논의를 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용진 위원 지금은 아마 이게 5년 하고 불법적으로 이것을 회피했을 경우에는, 과세를 회피했을 경우에는 10년으로 두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용우 위원님도 15년으로 하자는 이유는 갈수록 이게 첨단화되고 이렇게 하니깐 조금 더 과세 기간을 늘리고 하여간 법적인 의무 조항을 늘리자는 의미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용우 위원 실제 오늘 상정된 법안 중에 금융실명제법도 그렇고요 15년으로 올라와 있고요. 지금 보면 상속세·증여세 과세 제척 기간이 15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15년으로 하는 게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일단 상속과세, 상·증 과세 제척 기간 시효가 15년이라고 그래서 15년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 이 논리에 대한 점검을 해서……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오후 회의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오후 회의할 때 최종적으로 판단 좀 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다음, 자료 15쪽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관련해서 먼저 손해배상책임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할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 제재 외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의견 얘기해 주세요.

○오기형 위원 이건 일반적인 조항입니다. 손해배상책임 이런 걸 명백하게 해 보자 이런 취지니까.

○유의동 위원 이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을까?

○소위원장 김종민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다음, 17쪽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집단소송 도입 여부입니다. 오기형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해 주셨고요 조문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다만 집단소송은 법무부 소관 사항이라는 점에서 법무부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합니다.

○오기형 위원 이건 그러면 제가 약간 보충 설명만 좀 드리겠습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도입돼 있습니다. 일반적 집단소송법은 아니고요, 일반적 집단소송법 도입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었고. 이 사안 자체가 이제 증권 관련된 제도의 규제들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의 제도를 준용하는 형태로서 분쟁이 있으면 여러 다수 피해자가 있으니까 하나의 절차를 추가해 보자 이런 의견입니다.

○이용우 위원 법무부 의견은 뭐예요?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보내왔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의견을 아직 안 보내오고 있습니다.

○박재호 위원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넣어 가지고 법사위에 가서 조문 정리하도록 하지요.

○소위원장 김종민 집단소송 확대하는 게 원래 법무부 부론이었는데 그게 이제 바뀌었나 보지요?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게다가 가상자산거래라고 하는 게 증권거래보다 더 상당히 조정이나 여러 가지 불공정거래가 많이 있는 상황이고 또 잘 모르는 피해자가 상당히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두는 건 크게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혹시라도 법무부 의견이 오면 위원님들한테 좀 안내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예.

○소위원장 김종민 다음.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18쪽, 부정거래행위 유형과 관련해서 기타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삭제하자는 얘기인데요. 법무부에서는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죄형법정주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부정거래행위 유형 중 기타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삭제함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위원님들 의견 얘기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19쪽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에서처럼 과징금을 도입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 수용 가능합니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시 이에 대한 조사권 외에 관련 조직·인력·예산 확충이 필요하므로 관련 부처 협의가 긴요합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의견 얘기해 주세요.

○**유의동 위원** 그러면 이거 도입하게 되면, 이걸 도입을 해야 법적 근거가 있어서 조직도 만들고 예산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먼저 선행된 후에 이거를 한다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그냥 이거 찬성하시고 나중에…… 그게 금융위가 바라는 거일 것 같은데, 눈빛이? 그렇게 하시지요.

(웃음소리)

○**소위원장 김종민** 바라는 대로만 하지 말고 좀……

○**유의동 위원**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반대로 같까요? 과징금 없애?

○**소위원장 김종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다음, 22쪽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 관련입니다.

검사 권한의 주체에 금융감독원을 법률에 직접 명시할지 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23쪽에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공동 의견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가상자산사업자가 비금융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검사·조치 권한은 법률에 금융위원회로 명시하되 권한의 위탁을 통해 금융감독원에서 검사·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조치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대의견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의견 얘기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27쪽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상거래 감시·조치 결과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금융당국의 조사·조치 권한을 규정할지 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도 금감원과 금융위 공동 의견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조치 권한을 추가하는 데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의견 없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자료 33쪽입니다.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권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할지 여부에 대해서……

○**윤창현 위원** 잠깐만, 30페이지 디지털자산위원회에 대한 거 이거는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윤창현 의원님 안에서는 지금 금융위나 금감원이 아닌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검사·조사를 하자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관련 자료는 30쪽하고 31쪽에 있고요. 디지털자산위원회는 현재 금융위에 설치돼 있는 증선위와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창현 위원** 이걸 좀 설치를 해야 되는데.

행안부 와 계세요?

○**행정안전부조직정책관 한순기** 조직정책관 와 있습니다.

○**윤창현 위원** 행안부에서 전달기구 설치 의견을 어디다 누구한테 전달하셨어요?

○**행정안전부조직정책관 한순기** 22년 10월과 그 다음에 지난주 주말에 정무위 입법조사관과 수석전문위원께 제출했습니다.

○**윤창현 위원** 저한테는 얘기 안 하시고요?

○**행정안전부조직정책관 한순기** 예, 별도로 방문 설명은 없었습니다.

○**윤창현 위원** 왜 대표발의한 의원한테는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행정안전부조직정책관 한순기** 정부 측 의견을

여쭙서 저희가 공식 루트를 통해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윤창현 위원** 국회하고 소통하실 때 이렇게 하십니까, 원래? 대표발의한……

○**행정안전부조직정책관 한순기** 조직 관련한 사항은 타 상임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윤창현 위원** 이거 보셨어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한번 읽어보시지요.

○**행정안전부조직정책관 한순기** ‘개미 코인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투자환경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디지털산업진흥청의 설립을 추진’.

○**윤창현 위원** 누가 발표하셨습니까? 보이세요, 발표하신 분이 누군지?

○**행정안전부조직정책관 한순기**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윤창현 위원** 파악하지 않아요, 이거를?

○**행정안전부조직정책관 한순기** 제가 처음 접하는 내용입니다.

○**윤창현 위원** 22년 1월 19일 날 윤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디지털자산 전담기구 설립 공약을 하셨는데.

○**행정안전부조직정책관 한순기** 제가 미처 파악 못 하고 있었습니다.

○**윤창현 위원**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조직정책관 한순기** 예.

○**윤창현 위원** 그러니까 국정기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국정기조라는 말을 막 써도 되나요? 이런 거를 좀 보시고 쓰셔야지. 어때세요?

○**행정안전부조직정책관 한순기** 저희가 지난 주말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의견에서는 위원회 설치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을 드리지 않았습시다. 조정 수용의 입장을 드렸습니다.

○**윤창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괜찮습니까, 만드는데는?

○**행정안전부조직정책관 한순기** 조정 수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조직법과 행정기관 소속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에서 네 가지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조건 중에 특히 세 번째 조건이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을 가질 것, 그다음에 네 번째에서 말하는 그 업무의 상시성·계속성·체계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세 번째, 네 번째 관련해서는 다소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관련된 규정이라든지 디지털자산의 범위·경계, 현행 금융위 업무로 봤을 때는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행정위원회보다는 심의·의결 위원회 성격으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윤창현 위원** 금융위는 어때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전문적인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직 구성·구조는 행안부와 긴밀히 협의하려고 합니다.

○**윤창현 위원** 협의를 하는데 근거조항은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냥 아무것도 애기 안 하고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행정안전부조직정책관 한순기** 위원님 발언 기회를 주시면, 이번 법에서 금융위의 권한과 기능이 명시된다면 그에 적절한 조직과 인력은 저희가 후속적으로 조치할 것이고요.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 단계와 여러 가지 법안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심의·의결 위원회로 우선 설치하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윤창현 위원** 그러면 그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법에 조항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조직정책관 한순기** 예, 지금 있는 조항은 행정위원회로서의 성격을 상정한 문안이기 때문에 일부 문안의 수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면 어떻게 수정해요?

○**행정안전부조직정책관 한순기** 예를 들면 압수수색 같은 권한을 디지털자산위원회에다 명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보통 행정기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심의·의결 위원회에서 권한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금융위원회로 수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창현 위원** 금융위원회는 그 정도면 되겠어요, 일단?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그 부분은 좀 명확하지 않아서 생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창현 위원** 그러면 더 검토를 해야 되겠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윤창현 위원** 아니, 그래서 이거를 당연히 청 까지도 얘기가 됐었던 부분인데. 커미션 형태의 그런 조직을 갖다가 하나 설치해 가지고 역할을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국정기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고……

○**행정안전부조직정책관 한순기** 위원님, 명확하게 좀 하고 싶은데 커미션은 합의제 행정기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 의견을 드리고요.

○**윤창현 위원** 그러니까 심의·의결만 한다?

○**행정안전부조직정책관 한순기** 심의·의결 기능을 가진, 그러니까 지금 업무 특성상 사전에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는 심의·의결 성격의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저희는 일부 보고 있습니다.

○**윤창현 위원** 합의제 행정기구는 좀 너무 크다고 보시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조직정책관 한순기** 예, 아까 말씀드린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의 중복성이나 독자성 부분에 대한 부분이 신중하고요. 또 지금 단계에서는 그 업무의 계속 상시성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창현 위원** 그러면 심의·의결에다가 입법하고 정책 기능을 집어넣어서 그 정도까지만 추가를 해서 한번 조항을 집어넣는 것으로 입법도 하고……

○**행정안전부조직정책관 한순기** 입법 어떤 법령……

○**윤창현 위원** 이것 관련한 입법과 정책의 수립 기능까지만 집어넣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조직정책관 한순기** 보통 자문위원회 등 심의·의결 위원회가 정책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심의·의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뜻이라면 저희가……

○**윤창현 위원** 거기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소위원장 김종민** 입법까지 들어가요, 입법?

○**행정안전부조직정책관 한순기** 입법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은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 자문하고 심의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그건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창현 위원** 그것까지 집어넣어서 수정을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종민**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저는 존경하는 윤창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지금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실제로 산업 진흥이나 이런 측면을 본다면 상세한 제도나 여러 가지, 이걸 1단계 2단계로 나누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2단계 논의 상황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고, 1단계에 있어 가지고는 불공정거래와 그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행대로 하면서 2단계 논의를 할 때 과연 그 성격을 어떻게 할 건지 행안부의 의견과 금융위 의견 같은 것들을 조율해서 그때 논의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창현 위원** 기구는 설치하고 그 역할을 갖다가……

○**이용우 위원** 기구 설치할 그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윤창현 위원** 아니, 그걸 넣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걸 공유를 했잖아.

○**이용우 위원** 저는 증선위나 이쪽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박용진 위원** 부위원장님, 지금 디지털위원회를 별도로 두자고 하시는 이 의견이 만일에 없었다고 그러면 관련된 업무를 금융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소화하려고 하셨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향후에 추가적인 조직이나 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박용진 위원** 현재 인력으로는 어렵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추가적인 조직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조직 확장을 계획을 했었지요.

○**박용진 위원** 그러면 윤창현 위원님이 제안하시는 디지털위원회가 필요하냐?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하여튼 조직이나 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저희가……

○**박용진 위원** 아니, 일단 조직하고 예산을 좀 늘려 달라는 수준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것하고 다른 문제잖아요.

○**윤창현 위원** 아니, 2단계를 가려면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서 2단계까지 계속 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필요하니까……

○**박용진 위원** 그런데 지금 부위원장님을 봐서는

‘일단 만들어지면 좋지요’ 이런 수준이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이 뭐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 저희가 인력이 확실히 필요한데 일단 행안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기형 위원** 말씀하신 것 잠깐 정리 한번 해 보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조사권이 추가가 되니까 조사 인력이 필요하다, 그 조직의 확대보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그 말씀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만약에 디지털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 그 기능이 어디까지 갈 거냐 해서 행안부에서 오신 분이랑 말씀하신 요지는 그게 입법이든 뭔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산업 진흥으로 갈 수 있는 역할까지 있는 것 아니냐 이 지점에 대해서는 지금 1단계, 우리가 법안 논의할 때는 거기까지 가는 건 약간 고민 좀 해 보자, 더 숙성을 해서 2단계에서 논의하면 어떻겠냐 이런 문제의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논의의 맥락이 살짝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후의 산업에 대해서 입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뭐 찬반은 아니고, 지금 논의하는 것보다는 이후에 한번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윤창현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그걸 만들어 줘야 2단계를 갈 것 아닙니까? 2단계를 안 갈 거면 모르겠는데, 갈 거면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추진하도록 해 줘야 2단계로 갈 것 아니에요? 2단계로 가서 얘기를 하자 이게 아니라는 거지요.

○**오기형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논의하는 것에서 가상자산에서는 불공정에 대한 규제, 규제에 대한 절차는 확실히 하자 이 내용 수준을 갖고 봤을 때 그 규제와 관련된 조사권이 지금 2개의 조항이 추가되면서 부위원장이 이야기하시는 게 조사 인력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 조직 이야기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와 별개로 지금 디지털위원회를 만들 경우에 그 기능을 어느 정도 할 거냐에 대한 논의가 따로 또 추가됐던 거고요.

그다음 그 부분에서 뭐 입법 기능까지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 현재 그게 조사 기구로서의 성격이나 아니면 또 다른 것이냐에 대한 약간의 또 의견 정리는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창현 위원** 압수수색은 빼고 심의 의결 그다

음에 정책 권고, 제도 개선 이렇게 집어넣으시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하나 근거를 집어넣어야 2단계를 갈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니까 2단계를 준비하는 기능을 부여한 그러한 별도 기구를 만들자는 거지요, 지금? 거기에 조사 포함해서, 조사 및 정책자문을.

○**이용우 위원** 사실 그게 필요하면 금감원하고 금융위에서 지금 인력을 추가하고 TF팀을 구성을 해서 해 가면서 지금 뭐 뭐가 법적으로 필요하고 조직에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래야 법안에 들어가는 거지. 여기서 그런 건 아니지요. 굳이 저는 여기서 다 넣을 필요 없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박재호 위원님.

○**박재호 위원** 행안부에서 뭘 하나 만들면 계속 조직 이야기하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금융위원회에서는 조직이 많을수록 좋고, 공무원들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 다 많으면 좋다, 다 하자 그리고 뭐 하면 위원회 다 만들어서 다 하는데.

제가 윤창현 위원님 이야기를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고 어쨌든 이것은 이제 시작을 하는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잘못된 걸 규제나 이런 걸 하는데 더 중점을 두고 앞으로 이걸 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는 그런, 금융위원회에서 이것 우리가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이런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 보자, 다른 TF도 만들고 뭐 이런 근거가 되는 게 맞는데. 물론 이게 근거 조항을 넣어 놓으면 빨리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어찌 될지도 모르는 입장, 이제 시작하는 제정법인데 과연 그걸 넣는 게 맞는지 저도 의문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행안부에서나 금융위원회에서 강하게, 이걸 하려면 사실은 금융위원회에서 이걸 해야 된다고 강하게 밀어붙이든지. 이것 지금 입법과 갖고 아무런 설명 없다가 갑자기 위원님이 이야기하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행안위에서는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을 거고. 이게 과연 우리가 어떤……

○**소위원장 김종민** 잠깐만요, 잠깐만요.

박재호 위원님 다 끝나셨지요?

○**박재호 위원** 예.

○**소위원장 김종민** 이 문제는요 지금 쟁점이 이런 것 같습니다. 이 기능에 대한 이견은, 압수수

색 문제를 제외하면 기능에 대한 이견은 별로 없어 보여요. 이게 행정 기능까지 가는 건 아니고 단순 조사와 정책 자문 정도 수준에서 가는 건데 이걸 금융위 내부 조직으로 운영을 해도 윤창현 위원이 얘기하는 2단계에 대한 준비 작업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윤창현 위원님께서 이런 별도의 이름을 부여한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이후 프로세스가 가능하다는 그 핵심 근거를 한 번만 더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조사나 정책 자문 기능을 금융위 내부 조직에 두고 해도 가능한 상황 아니냐 이런 인식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꼭 필요한 이유의 근거를 다시 한번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윤창현 위원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윤창현 위원** 이재명 후보께서도 감독원 설치를 공약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할이, 우리가 1단계로 한 이유도 2단계를 전제로 1단계를 얘기한 거고, 기본법으로 가면 거기에서 상장 문제 뭐 코인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집어넣기가 힘들어 가지고 1단계부터 시작을 한 건데 그 1단계에서 2단계를 안 갈 거면 몰라도 간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조직 하나를 만들어 줘야 될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입장을 번복을 해 가지고 뭐라도 하나 만들어 두는 것에 대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찬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라도 만들어 드려야지요.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이제 2단계로 가서 업권법이 만들어졌을 때 별도 조직이 행정위원회 수준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걸 다 인식을 같이할 거예요, 아마.

○**윤창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일종의 씨뿌리기식으로 해서 이걸 넣어 줘야 될 할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니까 그걸 금융위원회의 내부 조직에서 그 준비 작업을 해도 되는데……

○**윤창현 위원** 내부 조직의 이름을 하나 붙여 주자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종민** 이름을 붙여 주는 필요성이 뭐냐 이거지요.

○**윤창현 위원** 그게 있어야 제대로 전담을 해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이용우 위원** 행안부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

○**행정안전부조직정책관 한순기** 지금 명확히 해야 될 것은 이 위원회가 행정위원회라는 걸로 했을 때는 기관이나 조직 명칭을 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그게 아니라 보통 말하는 자문위원회 같은 성격의 위원회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면 사실상 지금 윤창현 위원님 말씀으로 따지면 금융위원회의 내부 조직의 한 형태를 디지털자산으로 하자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별도 위원회를 만드는 건 아니고.

○**행정안전부조직정책관 한순기**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게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한다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그건 아니라니까.

○**박용진 위원** 그러나 이게 좀 다른 게 법적 기구로 하자고 하는 건 권한도 있고 관리 인력도 분명히 두고 이렇게 되면 일이 지금 복잡해지고,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이 지금 그것까지 실효성이 아직 확인되고 검증되지는 않았다 이런 느낌들이신 거예요.

윤창현 위원님께서선 선제적으로 이걸 고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기구가 설치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지금 금융위원회 태도를 보면 어떤 적극성이라든지 사전계획성이라든지 이런 건 보이지 않고 인원도 보장해 주시는 거라면 좋겠다는 느낌인데, 또 행안부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만일 그렇게까지 가는 거라면 법적 근거를 두고 인원도 예산도 확보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지금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그러시니……

○**소위원장 김종민** 아니, 그건 아니예요. 그건 아니고 지금 이제……

○**박용진 위원** 그렇다고 꼬덕꼬덕 하는데?

○**소위원장 김종민** 아니, 그건 아니고.

○**박용진 위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윤창현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일단 이것 관련된 법에 근거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또 관련된 인원과 재정 안에서 관련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TF 등을 구성해서 업무를 진행하시다가 독립적이고 이런 위원회를 따로 별도로 가는 것, 지금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윤창현 위원님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 게다가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약 사항까지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이것은 완전히 독립된 별도의 기구란 말이에요,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구조까지 우리가 지금 합의가 안 되니까 금융위원회 안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TF 기구를 두고 해서 경험을 쌓고 필요성을 제고한 뒤에 다음 스텝으로 나가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의견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단 2단계 가기 전에 추가적인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현재 인력과 조직으로 저희가 수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정확한 정부 조직과 구성·구조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이게 맞는지 한번 의견 얘기해 봐요.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업무 내용과 인력과 예산과 관련되는 문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박용진 위원님이 약간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건 이견이 없어요. 이 껍질, 간판을 디지털자산위원회로 붙일 필요성을 윤창현 위원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용 차이는 없고. 뭐 행정위원회로 하자, 입법 기능 하자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문제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내용상의 이견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행정안전부조직정책관 한순기 지금 법상 권한과 업무가 추가되면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쉽게 말하면 국이나 과가 늘어야 되느냐,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합의제 행정위원회가 필요한 거냐, 제가 말씀드리는 자문위원회가 필요한 거냐, 이 세 가지가 될 텐데.

첫 번째는 저희가 적이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국이 필요한지 과가 필요한지 몇 명이 필요한 건지는 업무량을 봐서, 신규 증가되는 업무를 봐서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합의제 행정기관은 저희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계에서, 아까 이용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업무 자체가 이용자 보호 쪽에만 국한돼 있고 진흥이나 육성 업무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그것도 윤창현 위원님이 동

의하는 거니까, 그것은 빼고.

○행정안전부조직정책관 한순기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것은 2단계 가서 추후에 논의할 문제이기 때문에 합의제 행정기관은 반대다. 다만 첫 번째, 국이나 과가 운영 과정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자문이 필요하다, 그런 위원회는 구성할 수가 있겠지요, 자율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면 그게 법정 규정이 필요한가요?

○행정안전부조직정책관 한순기 그것은 선택입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면 윤창현 위원님, 지금 말씀대로 국·과에 조사 인력과 조직을 만들고 그다음에 정책 자문과 2단계 준비를 위한 정책 자문 기능의 디지털자산위원회를 같이 동시에 만드는 이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윤창현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려면 근거를 하나 넣어 줘야, 아주 간단한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김종민 법 조항을 넣자 이걸 어떻게 보세요?

○윤창현 위원 예, 법 조항 딱 하나 명시적으로……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니까 내용은 이것 갖고 논의해야 됩니다, 확대하지 말고.

○윤창현 위원 내용은 저거 하고, 법 조항 하나만 딱 넣자고.

○행정안전부조직정책관 한순기 저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법에 따르면 그런 정책자문위원회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더라도 부처,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할 수는 있는데 법에 넣어도 돼요 안 돼요, 보통 우리 관행상?

○행정안전부조직정책관 한순기 넣은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소위원장 김종민 넣은 경우도 있고. 오케이. 자, 됐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그런데 저는 이 경우에서, 이 법에 의해서 권한과 해야 될 일이 추가됐습니다. 추가됐으면 그것에 근거해서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국이나 과를 만들든지 하면 될 일이지 왜 이 법에 그게 들어가냐고요. 저는 그게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창현 위원 저는 그 커미션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합의제 행정기구적인 그런 권능을 가진 커미션이 밖에 따로 있어야 된다고 봤어요, 처음에.

○소위원장 김종민 그거는 지금 2단계로 가는 거고요.

○윤창현 위원 그 정도까지는 못 가도 내부의, 커미션 인 커미션이지요, 금융위 자체가 커미션 이니까. 그래서 내부에 있는, 금융위 내부에 있는 증선위 형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제대로 일을 한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것에 준하는 그 정도까지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후퇴를 하더라도 근거는 하나 넣자……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2단계 입법이 된 이후에 그때 우리가 논의해 보자, 이것은 다 이견이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1단계를 하더라도 이게 새로운 입법이 이루어지는데 새로운 입법을 담당하는 또는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식의 정책자문기구를 위원회 형태로 준비를 해 놓는 게, 이게 실질적인 의미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의미를 지금 주장하시는 건가요?

○윤창현 위원 예, 그러니까 후퇴를 좀 한 겁니다, 제가.

○소위원장 김종민 윤한홍 위원님.

○윤한홍 위원 행안부에 하나 물어볼게요.

거기 금융위원회에 실·국을 만드는 것은 행안부가 조직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조직정책관 한순기 대통령령 사항이라서 정부 내에서 하니까……

○윤한홍 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해야 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조직정책관 한순기 예.

○윤한홍 위원 그러면 기재부 예산실은 동의 안 해도 됩니까?

○행정안전부조직정책관 한순기 협의가 필요합니다.

○윤한홍 위원 필요하잖아요.

○행정안전부조직정책관 한순기 예, 예산 협의 필요합니다.

○윤한홍 위원 그다음에 이 일을 금감원에 위탁을 주기로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행정안전부조직정책관 한순기 예.

○윤한홍 위원 그러면 금감원에 실질적인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조직정책관 한순기 예.

○윤한홍 위원 그러면 금감원의 인력 늘리는 것은, 그것도 행안부가 관여합니까?

○행정안전부조직정책관 한순기 행안부는 아닙니다.

○윤한홍 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해요?

○행정안전부조직정책관 한순기 금융위와 기재부하고 협의 사항입니다.

○윤한홍 위원 그것은 기재부 사항입니까?

○행정안전부조직정책관 한순기 예.

○윤한홍 위원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든요. 디지털자산위원회도 예산실이 필요한 거예요, 행정위원회로 가려면. 그런데 행정위원회를 반대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뭐 기재부도 마찬가지로 일 거고요. 그러면 이게 자문위원회 같은 것은 법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조직정책관 한순기 예.

○윤한홍 위원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윤창현 위원님은 행정위원회 성격의 강한 위원회가 필요하다 하는 그 말씀을 계속하신 건데 자문위원회의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법에 넣어 놓으면 나중에 행정위원회로 가는 데 방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없으면 나중에 그런 위원회를 설치하기가 유리한 것 아닌가요? 그런 측면은 없습니까?

○윤창현 위원 성격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넣어 놓고서?

○윤한홍 위원 아니, 자문위원회를 특별히 법에 명시한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문위원회로 해 놓고 행정위원회로 나중에 바꾸려면 더 힘들지 않을까요?

○소위원장 김종민 그때 입법을 해야지, 법 개정을 해야지.

○윤창현 위원 그것은 개정을 하면 되지요.

○윤한홍 위원 차라리 자문위원회를 법에 없으니까 금융위원회에서 필요해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해 보니까 필요하다 해서 나중에 이걸 강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이 말이지요.

○윤창현 위원 금융위원회는 어떠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

○박용진 위원 금융위원회가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소위원장 김종민 이용우 위원님, 간단하게.

○이용우 위원 저는 윤창현 위원님이 커미션 내의 커미션, 그러니까 위원회 내의 위원회, 증선위 아니면 증선위보다 좀 더 수준을……

자, 이거는 행정조직법상 과연 위원회 내에 위원회를 두고 또 자문위원회를 이런 복잡한 행정 절차에 대한 것들을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실제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예산 다 해서 실·국이 필요한지 과가 필요한지 해 가면서 이 업무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다음에 뭐가 필요하다면 그때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맞지 지금 여기서 한다는 건 속도위반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제가 개인적으로 윤창현 위원님을 역지사지해서 의견을 한번 드려 볼게요.

저는 내용적으로 업무상에 어떤 이견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들 사이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국 단위의, 국·과 단위의 어떤 행정조직이 필요하냐 업무가 필요하냐 예산이 필요하냐 이견 합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금융위가 계속 가는 업무가 아니고 언젠가는 새로운 조직과 새로운 형태가 필요한 거니까 여기에 대한 정책자문 기능은 필요하다, 그러면 금융위가 그냥 임의적으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이미 2단계 입법을 예정해 놓고 있으니 금융위의 자체적인 업무가 아니라 좀 확대되고 독립된 업무를 예정·예고하는 정책자문 기능을 밖의 외부 인사들을 충원해서 위원회 기능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이후에 업무를 준비하는 데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이런 정도의 의견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런 취지도 서로 내용상의 이견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반대 의견 또는 혼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말이 맞나요?

○윤창현 위원 예, 정확하다고 보고요. 새 술을 새 부대에 넣듯이 제정을 하고 1단계로 끝날 게 아니라 2단계로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니까 핵심이 정책자문 기능을 폭넓게 운영하자는 건데 지금 만약에 그냥 국·과만 두게 되면 사실상 조사 기능하고 행

정 기능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자문 기능을 보다 폭넓게 준비하는 예비적 조항을 하나 집어넣자 이런 정도 같아요.

○박용진 위원 그런데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소위원장님께서 정리하신 윤창현 위원님의 말씀은 자문위원회 성격의 기구를 자체적으로 두는 문제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윤창현 위원님께서 이 관련 기구를 설치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증선위의 형태에 그리고 아까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언급하셨을 때도 완전히 독립적이고 다른 기구까지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라 지금 우리가 가장 낮은 수위로 합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법안에 이걸 넣을 필요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러나 윤창현 위원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가장 낮은 수위로 합의하는 그 수준이 아니고 사실은 다른 걸 염두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법에 넣는 것에 대한 합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지금 소위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정도의 정리면 아까 행안부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가지고 진행하셔도 되잖아요? 실질적인 역할은 국·과 설치하고 인원 지원받고 해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정도 못 하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1단계 진행 말씀하신 건가요?

○박용진 위원 예,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저희 조직이나 인력이 있으면 가능한데 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추가적인 역할은 아마 논의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용진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경찰에 물어보세요. 경찰이 10만인데요 인원 부족하다고 난리예요. 검찰에 물어보세요. 검찰도 지금 마약도 잡아야 되겠고 뭐도 잡아야 되겠고 얼마나 바쁘고 일이 많은데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아니요, 저희 인원은 확실히 부족합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이거 인력 문제는 아니야.

○박용진 위원 그러니까. 인원 문제를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행안부에서도.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 위원회를 별도로 이렇게 두는 문제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위원님들 내 합의 수준과 고민의 수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윤창현 위원 하나만 추가할게요.

디지털자산을 금융으로 볼 거냐, 본질적 금융자산이냐라고 하는 문제. 그래서 디지털자산이 금융자산의 성격이 상당히 강하지만 그래도 그 자체가 금융 자체는 아니라는 시각, 그게 이 조직의 필요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지요. 비록 금융위원회 내에 있지만 완전히 금융자산은 아니라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감원의 역할을 여기다가 명시할 만한 이유도 금감원이 직접 이 법에 들어오게 되면 금융자산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가상자산업자는 금융업자가 되는 건데, 조금은 차이가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산을 다루는 위원회를 명시적으로, 비록 밖에다 설치할 수는 없지만 안에라도 설치하되 그 간판을 정확하게 달아 가지고 약간의 차별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거기서 살리자 이런 기본적인 접근의 문제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좋은데요.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업무 내용상의 차별성을 담기에는, 그건 우리가 그냥 조사 기능 정도만 해서 관리감독하는 건 1단계로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정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능만 놓고 보면 그냥 금융위원회 이름으로 해도 된다, 이게 지금까지의 컨센스였어요.

그런데 위원님이 그것을, 내용적으로 그걸 바꾸는 건 아니에요. 단지 예비적 정책자문과 정책준비 기능을 해 놔야 디지털자산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형의 어떤 양상이 뭔가 흡수될 여지가, 좀 효율적이다.

○윤창현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금융자산하고의 약간의 차별성이라는 것도 거기에 감안이 되는 것이고 2단계로 가는 데 준비하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디지털자산은 정확하게 금융자산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가진 기구를 비록 금융위 밖에다가는 못 해도 안에라도 간판을 달아야 조금 차별화되는 게 느껴지지 이렇게 그냥 금융위에다 넣어 놓고 있으면 그냥 금융자산 자체가 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라도……

○소위원장 김종민 변화가 없다. 업무 내용상의

변화는 없는 거지요?

○윤창현 위원 업무는 금융위가 하겠지요. 그러나 그 조직 자체가 간판을 달고 움직여야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차별화된 뭔가를 하지……

○소위원장 김종민 또 하나 의견이 지금 국·과를 신설하는 거예요, 행정적으로는. 행정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그 국·과를 거느린 위원회는 자문위원회는 아니란 말이에요.

○윤창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운용상의……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면 별도 행정위원회가 아니면 금융위원회의 내부 위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윤창현 위원 중선위 같은 형태와 조금 비슷하게 가는 건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디지털자산은 금융자산 자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업자는 금융업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이라도 차별화시키려면 독립된 어떤 간판이라도 하나 달아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소위원장 김종민 이 얘기는 일단 윤창현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전달됐으니까, 이게 의견이 당장 좁혀지지 않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때 다시 한번 토론해 볼 테니까 그때까지 조율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성주 위원 의견을 하나 드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상자산법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논쟁이 있었습니다, 또 깊은 토론도 있었고. 이게 과연 필요하냐, 서둘러 입법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걸 통해서 어쨌든 간에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행위 규제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했고 또 이것은 시급한 입법이 필요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 외에 산업 진흥 이런 측면들은 일단 제외하기로 한 것이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법안의 재정 논의에 들어간 배경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심의를 하다 보니까 가볍게 옷 입고 출발했는데 모자도 쓰고 스카프도 두르고 뭐 또 두 켄레씩 신자 이렇게 가면 이게 다시 또 무거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저는 2단계 입법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하고 논의를 시작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선 출발하고 필요하면 그렇게 가자는 거지, 2단계 입법을

전제로 하고 거기로 가는 포석을 깔자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후 논의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자꾸 혼선이 생기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용상의 확장 여지는 논란이 아닙니다. 이걸 쟁점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합의가 된 거고. 이거에 대한 명칭을 윤창현 위원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내용상의 확장 여부를 다투게 되면 이 논의가 좀 옆으로 빠지게 됩니다.

일단 이거는 그렇게 하고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마무리 토론 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자료 33쪽,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권 관련 사항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입장 들으시겠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한국은행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안은 1단계 법안으로 1단계 법안의 목적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방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단계 법안에 올리거나 한국은행법에 올리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추가적으로 지급결제 관련해서는 현재 가상자산이 지급결제에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므로 그러한 의견을 더욱 서포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한국은행에서 누구 나와 있지요?

필요한 이유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한국은행부총재보 이종렬 암호자산 시장이 여러 측면으로 해서 금융안정이라든지 현재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장이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이나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 제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제출 요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오케이.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김한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2단계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

어서요 꼭 2단계까지 기다려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가상자산 발행·유통 체계 그런 걸 규제하는 경우에만 통화신용정책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가상자산이 지금 또는 향후에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걸 통화신용정책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 법안이 1단계나 2단계나 하고는 전혀 관계 없다고 생각하고.

또 한국은행에서는 일부 가상자산이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고, 우리가 처음에 가상자산을 접했던 게 비트코인인데 그런 게 실제로 지급 수단으로 처음에는 시작이 됐고 앞으로도 그런 방식으로 지급 수단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가상자산은 언제라도 있을 수 있는 거라서 그런 가상자산이 2단계 법안이 나온 이후에만 생기는 건 아니고 지금도 언제든지 발행할 수 있는 거라, 이거는 한국은행한테 제한적인 범위로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거라서 저는 1단계 법안하고도 충돌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이용우 위원 1단계, 2단계 따질 필요 없이 사실 보면 현실적으로 통화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은행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취급해서 그 은행의 금융 안정성이나 이런 것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나눌 것 없이 통화정책에 영향을 주는 한 자료제출 요구권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진 위원 전자금융거래법의 관련 조문에 보면 41조에도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권이 표시는 되어 있거든요, 법에?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위원장 김종민 이게 쟁점만 남은 거예요.

○오기형 위원 금융업이 아니라서.

○박용진 위원 규정을 따로 뒤야 된다?

○오기형 위원 저도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가상자산이 지급결제 수단은 아니지만 사실상 비트코인이나 어떤 중미의 어느 특정 국가는 법정화폐처럼 쓴다고 하는 나라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이나 중국 사회에서도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통화의 이동들이 실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금세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이게 1차, 2차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이 자체를

국가기관 간의 문제로 보지 마시고 자료 수집은 허용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윤창현 위원** 법제처 의견을 보면 ‘특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료제출 요구권 규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한국은행법 자체를 개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거기다가 집어넣는 것은?

○**한국은행부총재보 이종렬** 사실 다른 전자금융거래법이라든지 자본시장법에도 해당 업자가 수행해야 될 법률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당 업자가 그 관련법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상관없는 한국은행법까지 다 고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서면으로 의견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1단계에서 빠진다고 하면 2단계에서는 꼭 좀 반영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그런데 제가 보기에요 이것 은 1, 2단계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법제처 의견이 지금 이런 판단인데 실제로 이게 운영되는 과정에서 이런 필요성들이 생길 여지가 있잖아요, 1, 2단계 따질 것 없이. 만약에 그럴 필요가 있다면 입법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 저도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한번 의견을 내봤는데 이것은 한번 판단을 해 보시지요. 지금 이게 부작용이 있을까요, 조향을 넣었을 때?

○**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 박민우** 그것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국장입니다.

금융 관련법에서는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권이 당연히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금융업자에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가 예탁한 투자자예탁금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업무, 그리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 업무의 대리업무 이거에 한해서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 자료제출 요구권 자체가 지급결제와 관련된 내용에 한해서 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관련된 내용과 약간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한국은행법이라든가 다른 법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의견이었고 법제처도 그런 입장에서 제시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윤한홍 위원님.

○**윤한홍 위원** 저는 이게 일면을 보면, 지금 가상자산이 일부에는 지급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지요, 일정 부분? 되는 나라가 있지요?

○**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 박민우** 예.

○**윤한홍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사실 굉장히 빨리 가기 때문에 우리가 못 쫓아갈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지급결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가상자산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넣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이것은 한국은행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역으로 오히려 지급결제 수단으로 또 인정되는 그런 효과는 없습니까? 아니, 그것은 질문이에요. 이게 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 가상자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봐라, 이게 한국은행에서도 관리하기 시작했 다, 지급결제 수단이 된다’ 이렇게 역으로 치고 나올 가능성은 없는지. 내가 몰라서 질문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종민** 그 정도까지는……

○**윤한홍 위원** 그 정도까지는 아닐까요? 그 정도까지 아니라면 나는 넣는 건 반대를 안 하지요.

○**소위원장 김종민** 지금 윤한홍 위원님이 얘기한 게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박용진 위원** 금융위가 계속해서 이런 우려를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미뤄 왔었던 거예요.

○**윤한홍 위원** 금융위원회가 의견을 한번 취 보 세요.

○**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 박민우** 맞습 니다. 저희가 바로 지금 윤한홍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에서 이것을 이 법에다가 넣는 것을 우려 했었던 겁니다.

○**박용진 위원** 아니, 법 자체를 다루는 것도 반 대했잖아.

○**소위원장 김종민** 아니, 그것은 한국은행법에 도 마찬가지로.

○**박재호 위원** 이걸 인정은 안 하는데 하니까 서로 조직을, 나도 하자 너도 하자 이렇게 하면서 조직을 키우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보기에 참 안타깝지요.

○**윤창현 위원** 윤 위원님 말씀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조항들이, 예를 들어 간호법도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기본적인 법이 제정이 되거나 그랬을 때 권리가 생기거든요. 이런 지급결제 문제도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걸 언급함으로 인해서 그런 권리 내지는 그런 범위가 확장이 되는 가능성.

○소위원장 김종민 이용우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이용우 위원 저는 그 부분 윤한홍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급결제 수단이 아니고 화폐가 아닌데 이 법의 규율을 받고 있는데 화폐라고 주장을 했다면 사기죄가 됩니다. 사기를 친 거지요, 그 업자가. 그렇기 때문에 불공정거래행위로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극단적인 가능성을 따진다면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기라고 볼 수밖에 없고 불공정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1단계, 2단계 따질 게 없이 우리가 넣어 주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가상자산이 지급 수단으로 사용될지 여부를 저희가 막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것은 시장에서 이용자들이 또 그다음에 사업주들이 가상자산을 지급 수단으로 받아들여서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는 게 더 편하고 장점이 있는냐의 문제지, 저기가 법적으로 이것을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는 게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막아야지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걸 금지하지도 않는데 그 게 많이 사용될 수 있는 우려를 갖고 이 규정을 막아야 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요.

실제로 우려되는 것은 최근에 모 금융회사에서 대출액의 상당 부분이 가상자산 투자에 사용이 됐고 그렇다고 하면 가상자산 가액 변동에 따라서 그 대출금액 상환 여부 또는 가계부채, 더 나아가서는 통화량까지도 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일이백억 수준이 아닌 상황인데, 금융위가 이것을 한국은행법에 두면 되지 않냐라고 그냥 간단히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저희가 국가 전체 측면에서 한국은행처럼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수립하는 기관한테 권한을 충분히 줘야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어도 저희가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거지. 한국은행 입장에서 정무위에

서 신속하게 논의를 안 해서, 또 기재위 자체에서는 이 규정만 갖고 논의하기도 어렵고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논의를 못 한 그런 상임위라서 이것을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우려까지 고려해서 이 기회에 논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1, 2단계를 너무…… 1, 2단계 누가 이렇게 정해 준 것도 없어요. 어디 교과서에 나오는 것도 없고. 지금 현재 상황의 시장 상황 혹은 현실 양상을 볼 때 이 조항이 필요한지 이 판단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루나·테라가 시총이 59조가 증발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통화신용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현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1, 2단계를 구별해서 이게 맞나 안 맞나 하는 건 좀 안 맞을 것 같고 현재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실용적인 판단 위주로 한번 판단을 해 보면 낫지 않을까.

그러면 일단 이것은 반영하는 걸로 하되 혹시라도 위원님 중에 절대로 안 되겠다 그러면 마무리 토론할 때 한 번 더…… 지금 오찬 일정들이 있으시니까 일단 정회를 하고……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한 5분만 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아, 5분만 더 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마무리하고.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자료 35쪽입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제재 수준과 관련해서 일부 보완한 사항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위반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현 과태료 1억 원 이하는 자본시장법 과태료 수준에 따른 것으로 타 법 대비 낮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그 밖에 과태료가 추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의견 주세요.

○윤창현 위원 좋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다음, 자료 39쪽입니다.

가상자산 법률안과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전체 조문에 대해서 의견서를 보내온 게 있습니다. 그 중 네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의 1번, 가상자산의 보관과 관련해서 가상자산주소를 가상자산사업자가 작성·비치하여야 하는 이용자 명부의 내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와 관련해서 자본시장법과 같이 직무 관련성의 주체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규제 범위를 최대한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입니다.

다음, 42쪽의 자기발행 가상자산의 거래 제한과 관련해서 처벌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유형을 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43쪽의 벌칙과 관련해서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금지 위반과 관련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할 경우에 과잉처벌의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부당이득액의 산정과 관련해서는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벌금의 상한액을 5억 원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금융위원회 의견 들으시겠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전부 이견이 없고 다만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금지 위반 관련해서는 법무부 의견과 다릅니다. 자기발행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임직원 자기매매 금지 의무 위반과는 다르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여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양해 좀 잠깐만 구하고요. 제가 위원님들께 죄송한데 어저께, 그동안에 제가 입법을 준비해 오던 조항이 하나 있었는데 어제 간사님 양해를 구해서 일단 마지막으로 막차로 상정을 해 놓았습니다. 너무 늦게 조항을 제안해서 너무 죄송스러운데, 두 가지를 제안했는데 하나는 한국은행 자료요구권 아까 논의된 거고요.

또 하나는 상장기준 관련된 문제인데 이걸 왜 제안했냐면 최근에 실제로 코인원에서 상장피 관련된 비리가 불거져서, 실제로는 상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당·부정행위가 발생을 하는데 이것 관련된 규정은 제도는 우리가 2단계로 하기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런 사항들을 규율하는 데

좀 장애가 있지 않나 해서 상장제도 전체를 설계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논의하기는 어려운 거고 기본적으로 각 사업자마다 상장기준을 마련하고 금융위가 이 상장기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도의 이용자 보호조치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는 여기 전문위원님의 자료 정리에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그것은 이따가 마무리 토론할 때 한번 판단해 보시고, 1단계 우리의 합의된 수준에서 수용 가능한 건지만 판단해 주세요. 그러면 수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오후 2시에 의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회의를 3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회)

○**소위원장 김종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을 일단 먼저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아까 이견이 있었거나 아니면 검토가 필요했던 사항들을 마무리하고 최종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오전 회의에서 논의를 마치지 못한 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일단은 가상자산위원회, 자문기구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윤창현 위원님께서 준비하신 안이 있으신 것 같은데……

○**윤창현 위원** 내가 얘기를 해요?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예, 제가 자료가 없어서요.

○**윤창현 위원** 합의한 것을 받았습시다. 그래서 월급 받지 않는 비상임위원 5명, 입법정책 제도 개선 권고 국한, 조사권·압수수색권은 삭제 그리고 금융위원장 자문기구로 법률적 근거 없이 설치하는 것과 법률에 근거를 뒤 책임성을 부여하는 것은 선택적 입법사안 이렇게 해 가지고, 그다음에 가상자산 전문가와 금융전문가의 인력 풀이 다르다는 사실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조항을 만들어 왔네요.

○소위원장 김종민 누가 만들어 온 거예요, 이것?

○윤창현 위원 이것 둘이 만든 거지요, 행정부 하고?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소위원장 김종민 금융위에서 만든 거예요?

○윤창현 위원 예, 금융위하고 행안부가 협의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그런데 거기서 선택, 우리가 그것 가지고 아까 오전에 1시간 얘기한 거예요. 선택을 뭘로 할 거냐고. 그러니까 법에 조항을 넣을 건지 말 건지가 지금 쟁점인데 그것을 선택 하라고……

○윤창현 위원 법률에 근거를 어떻게 넣을 건지를 합의했어요, 여기 조항으로.

○이용우 위원 아니, 조항은 법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윤창현 위원님이 제안하신 제안이 부작용이 예상되거나 뭔가 문제점이 발견되면 얘기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정책자문 정도의 기구를 법에 넣는 게 자연스럽지는 않으나 수용해 줄 수 있는지가 의견만 빨리 얘기해 주세요.

○이용우 위원 저는 그것을 법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장이 자율적으로 자문기구를 두고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그에 따라서 필요하면 다시 얘기할 사안이지 그것을 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명문화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윤창현 위원 이유가 뭐니까?

○이용우 위원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법에……

○윤창현 위원 왜 근거가 없어요?

○이용우 위원 법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소위원장 김종민 그것은 근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법에 안 넣는 게 필요한 이유를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용우 위원 굳이 법에 넣지 않더라도 금융위원장이 자율적으로 자문기구를 두고 비상근 한다는 부대의견이라든지 이렇게 두면 되지 그것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러면……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면 넣으면 안 된다는 것 보다는 넣을 필요가 없다, 안 넣어도 된다는 거

지요?

○이용우 위원 예, 그렇지요.

○소위원장 김종민 안 넣어도 상관없다는 거지 넣으면 절대 안 된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용우 위원 아니, 행정법상으로……

○소위원장 김종민 지금은 그 결정을 해 줘야 돼요.

○이용우 위원 자문기구를 그렇게 법률적으로 하는 게……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님, 행정도 많이 하셨잖아요.

○윤한홍 위원 나는 뭐 우리 당 위원님이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불편해요.

○박용진 위원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면 최종적으로 이용우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윤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두에 대통령의 공약사항 또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약사항을 얘기하신 것은 그 취지가 상당히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원회를 생각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하면 사실상 그런 것에 미치지도 못할 뿐더러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기도 하고 하니까 금융위원회 안에서 자율적으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시고, 자문기구 정도라면 그렇게 하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사례와 경험들을 쌓은 뒤에 필요한 기구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 법 개정을 해도 늦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냥 이름만 거는데 뭐 어때라고 하지만 이 법의 첫 출발 자체가 그랬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괜한 오해를 서로 가지고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오해의 내용이 뭐예요, 오해? 그러니까 오해의 여지가 있다 이 대목이 뭐니까?

○박용진 위원 첫 취지는 행정위원회로서 제안을 했던 것 아닙니까, 대통령 공약사항이든 이재명 후보의 공약사항이든 간에?

○소위원장 김종민 그런데 지금 내용은 그게 아닌 거지요.

○박용진 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이 전혀 다른 건데, 첫 출발은 그렇게 했는데 굳이 이것을 법에 근거사항을 만들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는

겁니다.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하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윤창현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그렇게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후퇴를 했으니까 이 정도는 가능하게 해 주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법 또는 다른, 여기 법령까지 만들어 왔어요.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가상자산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정도로 딱 해서 근거를 넣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고 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용우 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 가상자산위원회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위원회 하면 일종의 권한과 조사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논의를 했던 것을 했다고 하더라도 위원회 내에 증선위 또는 증선위보다 낮은 위원회든 이런 위원회와 위원회의 관계 같은 것들이 행정법상으로 명료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지금 여기서 자문위라고 하는 것으로 있는데 법에 규정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오해가 된다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오케이, 이것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윤창현 위원님께서 가상자산정책자문위원회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행정위원회가 아니고.

그러면 가상자산정책자문위원회를 가상자산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법령으로 설치하게 됐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그 가상자산위원회가 행정위원회로 오인될 여지가 있다는, 그러니까 조직의 혼선이 여지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 보세요.

○윤창현 위원 그건 지금 행안부에서 안 된다는 얘기이고 대통령령에서 그게 통과될 리가 없는 것이고. 여기 보면 조사권, 압수수색권, 행정권 유사 조항 삭제예요. 월급받지 않는 비상임위원 다섯 명이고.

○소위원장 김종민 내용은 그런데, 내용은 알아요. 내용은 아는데……

○윤창현 위원 그렇게 내용을 다 거기다 담으면 되는데 그거 하나 안 넣어 준다고……

○소위원장 김종민 이름을 가상자산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윤창현 위원 이름을 막 붙이면 되지요.

○소위원장 김종민 법령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이게 정책자문위원회가 아닌 행정위원회인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 이 우려……

○윤창현 위원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그것을 집어넣지요.

○소위원장 김종민 아니야. 내용상으로는 이견이 없다, 내용상으로는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영할 때.

○윤창현 위원 그러니까 부대의견으로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오해받지 않도록 한다 이런 걸 부대의견으로 넣고.

그리고 행안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그걸 가만 두겠어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2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차별화된 어떤 간판 하나 달아 드리자 이런 얘기인데 그걸 그렇게 뭘 오해가 있다고 그러세요.

○소위원장 김종민 그런데 하여간 지금 위원님들 이거 한번 보세요. 윤창현 위원님 얘기의 요지는 내용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것은 분명한 것 같고. 단지 가상자산 업무가 금융위의 본업무가 아닌데 지금 누가 마크를 못하니까 금융위법으로 임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원회라도 만들어서 뭔가 가상자산 업무라고 하는 것이 새로 출현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시를 해 두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정도의 약간 상징적인 제안이라고 보는데.

이게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저는 아까 이걸 혼선, 거기가 무슨 의사결정하는 기구 아니냐 이런 식의 혼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윤창현 위원 아무튼 부대의견 달고 대통령령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금융이 아니란 말이에요. 금융위원회가 금융이라는데……

○소위원장 김종민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어요. 충분히 알겠으니까……

○윤창현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얘기를 해야지요.

○소위원장 김종민 그래도 동의가 안 되면 또 통과가 어려운 거니까 위원님들이 저 취지에 따라서 내용 확대가 안 되는 위원회를 정책자문위원회 내용으로 일단 법령으로 상징적으로 설치하자,

여기에 대한 의견들을 빨리 얘기를 해 주시고 정리합시다.

○윤창현 위원 아니,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상관이 있지요. 2단계까지 가려면 이게 있어야 잘 갈 거 아닙니까.

○이용우 위원 자문에서 해도 2단계 갈 수 있습니다.

○윤창현 위원 아이, 좀 해 주시지요. 이거 뭐 그렇게 간판 하나 다는데……

○소위원장 김종민 윤창현 위원님, 지금 윤창현 의원님 안에 찬동하는 위원이 한 분이라도 더 계시면 이거 계류를 하겠는데 윤창현 위원님 한 분이 주장하시는 거면 이것은 그냥 합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윤창현 위원 저밖에 없다고요?

○소위원장 김종민 지금 분위기가 그럴 것 같은데.

○유의동 위원 소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찬동하는 쪽으로 방향이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면 윤창현 의원안을 받아들이자고요?

○윤창현 위원 지금 받아주시겠다고 그러시잖아요.

○윤한홍 위원 예, 그냥 해 줘도 관계없고 안 해 줘도 관계없어요.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게 아주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윤창현 위원 하나하나 달아 주시지요, 그렇게.

○소위원장 김종민 꼭 넣겠다는 사람과 절대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용우 위원 행정 조직 속에 어떤 조직을 두게 되면 그 조직 자체가 자체의 논리를 가져가면서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경향이 있으면서 불필요한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그것도 법에 할 수도 있고, 안 하고 금융위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자율적으로 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그걸 국회와 이렇게 설득을 해서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시행령으로 둘 수 있고 시행령으로 했을 때 행안부가 합의하겠느냐. 왜 자꾸 입법 권한을 조직 특성을 밑으로 내리냐는 거예요. 저는 그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창현 위원 아니, 여기서 입법을 하잖아요. 가상자산위원회라고 이렇게 하나 간판을 두고.

○이용우 위원 그것을 위원회라고 뒀을 때 그게 위원회입니까?

○소위원장 김종민 자, 좋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말씀 안 하신 분들만 한번씩 말씀하시고 이 문제 결론 내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러면 만약에 두 분 중재를 위해서 법에 넣는다면 명확하게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가상자산특별위원회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정도로 중재안을 해서 넣으면 어떻습니까? 자문기구라는 것을, 자문기구라는 것을 명시하고 둘 수 있다 이 정도로 넣으면 어때요? 법안 서로 양쪽이 타협하는 안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소위원장 김종민 그것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윤한홍 위원 자문기구라는 걸 법에 명시를 하고, 끝에 둘 수 있다 이렇게 두면 어떻나요?

○박재호 위원 자문기구도 법에 뒀어요?

○윤한홍 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회든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넣으면 두 분이 서로 완화가 안 됩니까?

○윤창현 위원 그 정도로 하시지요.

○이용우 위원 저는 그 경우에도 가상자산위원회가 아니고요. 가상자산자문위원회라고 명기를 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가상자산정책자문위원회.

○이용우 위원 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면 그 정도로 합시다.

○윤창현 위원 관련 위원회라고 그러지요.

○박용진 위원 가상자산 관련 해요. 관련 위원회라고 해요.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면 정책 자문을 위한 관련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정도 합시다.

수석님, 전달이 됐지요?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예.

○소위원장 김종민 정책 자문을 위해서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그다음.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다음은 배부해 드린 두장짜리 자료 앞 부분을 보시면 김종민 의원안 제13조가 있습니다.

아까 회의 말미에 말씀 주셨었는데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상장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상장심사 절차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입니다.

입법 취지는 가상자산의 상장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용자 보호 공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으로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입법 조치로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가 법문 표현이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금융위원회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저희는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원안 말고 수정의견에 심사기준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자본시장법에도 일반주식거래소에서도 이러한 사항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제외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의동 위원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 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여기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원안이 됩니까?

○이용우 위원 원안이 뭐예요?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김종민 의원안이라고 돼 있는 부분인데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김종민 의원안이 원안입니다. 수정의견이 있는데 수정의견 말고 김종민 의원 원안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수정의견이 여기 지금 자료에 안 나와 있잖아요?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아니, 뒷부분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아, 뒤에 있구나.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두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저희가 수정의견을 낸 부분은 김종민 의원안 입법 취지대로 하려면 법문을 이 정도는 다듬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요. 금융위원회에서는 지금 자본시장법에서도 이런 상장심사 절차와 관련해 가지고 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2항이 필요 없다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는 지금 김종민 의원안처럼 2항을 그대로 두자는 말씀이신데 그건 법제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게 우려된다면 아예 2항을 삭제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항을 삭제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면 2항 삭제 의견으로 금융위원회 한번 판단해 보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면 일단 2항 삭제 의견으로 해서 1항 조항을 하는 건데 제가 이것을 좀 뒤늦게 발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보태고 의견을 들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코인원에서 상장 관련된 비리가 생겨서, 보통 이 가상자산 관련해서 상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사실은 상장 제도 정비를 하기에는 이번 우리 입법 목표는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이용자 보호나 부정거래, 불공정거래를 규율하는 이 법의 취지에 상장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 공백이 생기는데 최소한을 할 수 있는 게 이 내부 기준을 마련해 놔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금융위가 요청하면 제출하는 정도 이런 내부 통제 장치를 요구하는 정도는 좀 마련해 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안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 이용자 보호에 해당되는지 이것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제가 이 법안을 준비할 때 1단계, 2단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조항에도 '상장'이란 단어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ICO 이 구절이 들어가는 순간 ICO를 허용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코인원의 케이스나 이런 데에서 상장 과정 속에서 잘못된 행위는 사실은 사기죄와 다른 법률에 의해서 규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에 관련된 조항을 지금 이 순간에 넣는 것은 사실 1단계, 2단계를 이야기할 때 2단계에서 집중 논의해야 될 사안이지 지금 여기서 논의할 사안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의동 위원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도 이용우 위원에 아주 강하게 찬성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가상자산 관련 법을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의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칫 잘못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 지금 가는 이 작은

걸음마저도 전체적으로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상장이라는 대목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숙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지금 금융위에 잠깐 하나 물어볼게요.

현재 이 조항이 안 들어가도 지금 얘기한 가상자산 상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개 임의적이고 자의적이거든요. 누구도 여기에 대한, 내부통제 조치도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규율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것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 박민우 세 가지 사항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불공정거래 금지 조항이 들어가는데요. 거기서 마지막에 사기적 부정거래 금지 행위라고 함은 허위 공시를 하거나 공시를 누락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사업자가 누구든 간에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위반 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상거래 탐지 의무가 들어갑니다. 가상자산거래업자가 이상거래 불공정거래 위험이 있는 것들을 스스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가 모니터링이 되면 그것을 감독원과 관련 기관에 즉시 보고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그 의무에 대해서 부과됨으로 해서 저희가 현재 금감원이 가상자산업자들을 상대로 DAXA라고 하는 자율규제기구를 만들어서 공통적인 상장 기준을 자율규제 형태로 하는 것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안 됐을 때는 그 이상거래 탐지 의무 조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는 2단계 법안에서는 김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좀 더 깊이 있게 국제적인 기준과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그런데 일단은 현장에서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게 상장 관련된 문제점이, 상장을 어떻게 시키느냐가 제도상으로 투명하거나 절차적으로 확보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개 임의적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비리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내부통제 장치에서라도 그런 정도가 규율되거나 정리 정돈될 여지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조금 유예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떠냐고요.

○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 박민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현재 제시하고 계신 안은 상장심사 기준과 절차에 관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단다고 하는 걸로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수용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지금 이용우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오히려 상장이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가게 되면 마치 새로운 발행·유통 체계가 2단계 법안에 있는 내용들이 당연히 따라 들어와야 되는 것처럼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신중히 해야 된단다고 하는 것을, 그 역시 공감한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내부 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DAXA라든가 금감원이 주관을 해서 거래소들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저희가 이 법안이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좋습니다. 그러면 상장이라는 용어가 법에 도입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의체에서 내부통제 장치를 통해서 상장의 임의성이나 자의성, 불법 여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입법 취지를 반영한다 그렇게……

○이용우 위원 그런 조항을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그러니까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DAXA 내부 자율 통제나 이런 부분에서 잘 규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대의견을 일단 다는 걸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종민 그걸 어디에 달아요, 부대의견을?

○오기형 위원 법안 부대의견에 달면……

○소위원장 김종민 법안 부대의견, 오케이.

부대의견에 이 법의 취지가 반영되는 문구를 하나 좀 달아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예.

○소위원장 김종민 좋습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다음, 뒷장에 보시면 거래기록의 생성·보존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 개정안에서는 보존기간이 5년으로 돼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15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현행 국세기본법상에 제척기간은 15년으로 돼 있고요. 납세자가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는 5년간 보존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법상 현행 법 상인은 10년, 5년이구요. 박용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에는 금융회사 등에 한해서만 15년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현행 전금법은 금융회사 등이 의무 주체이고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 박용진·이용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실명거래법 개정안에서는 금융회사 등에 한해서 15년으로 연장하는 그런 개정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어떻게 할까요?

○이용우 위원 제가 15년을 했던 이유는 제척기간이 보통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국세기본법 26조의2에서의 부정확한 방법에 의한 상속세나 증여세 탈루의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이 근거를 가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가상자산사업자 거래소에서 거래했던 그 거래내역을 파악지만 제척기한 내에 탈세의 유무나 이런 부분을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15년으로 했던 거고 상법이나 금융거래법도 각각 15년으로 했던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5년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면 이것은 상법 개정 아니어도 가능한 거네요. 여기 포탈하거나 환급·공제의 경우 15년 조항이 있네, 현재로.

이건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잠깐만요. 약간 고민만 한 번 더해 보자고 계속 제기했던 건데,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장부라고 하는 걸 몇 년 보관하는 게 사회적으로 적절하냐의 문제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니까 이 개정안으로 넣을 수는 있다고 보고요. 15년 넣을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 10년 관행이 있으면 10년에 대해서 사회적인 부담, 이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어디까지 수용해 줄 거냐 해서 10년이라고 틀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보통 지금 세무 문제면 세무로 해서 그것까지 연장하는 게 적절하냐, 규제하는 입장에서는 길면 길수록 좋은 거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 적절하냐에 대해서 그래도 약간의 고민과 소통이 필요하고 풀면 어떨까 싶어서 계속 좀, 그렇습니다.

○박용진 위원 현재 다른 법에서도 이렇게 있는지를 확인하자 그러셨는데,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해 왔는데 15년으로 하는 관련 법들이 있으니까……

○오기형 위원 다시 제가, 이런 겁니다. 주신 자료 3페이지를 놓고 보면 장부의 보관의무는 통상적으로 10년인 겁니다. 지금 이 법을 개정하게 되면 장부 보관의무를 가상자산사업에 대해서는 15년으로 바꾸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장부 보관의무를 10년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 상속세·증여세 문제는 별도로 제척기간을 15년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세청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장부의 보관의무를 15년으로 한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세금 추징의 시간을 5년 연장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5년의 근거 기준이 장부 보관의무의 다른 것과는 개념이 좀 다른 거지요.

○소위원장 김종민 오케이,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오기형 위원 이 상황에서 가상자산 논의하면서 우리가 종래에 일반화된 제도를 별도로 연장을 하려면 논의가 더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여기 뭐 강하게 하면 다 좋은 건데 하지만 실제 현실 적합성 관련된 많은 분들의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오케이. 장부 보관기간을 15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조금 다른 점이다, 다른 내용이다 이건데.

○이용우 위원 그런데 최근에 전산 스토리지 감안하면, 금융회사가 벌써 10년 이상 다 하고 있고요. 국세청에도 확인을 해 본 바로는 국세청에서도 15년으로 해 달라, 왜냐하면 세무조사나 이렇게 했을 때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예전처럼 서류로 이렇게 장부를 보관했을 때 10년이라는 건 굉장히 긴 기간인데 요즘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15년으로 해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박재호 위원 일단 해 놓고 법사위에 넘기시지요. 일단 심의를 해야지, 나머지는 저기 가서 하고.

○오기형 위원 아마 거기서 논쟁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소위원장 김종민 아니, 지금 이게 상법의 장부 보관 10년하고 다른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상당히 창의적인 입법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창의적인 입법의 필요성이……

○박재호 위원 가상자산은 특히 더 나중에 상속이나 여러 가지 부정이 생길 수 있어서, 옛날처럼 장부를 책으로 해 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 놓는 것이 나중에 과세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 하는 입장이 되는 거지요. 창의적으로 한번 해 봅시다.

○소위원장 김종민 장부 보관업무 규정이 상법에 10년으로 돼 있는 것을 가상자산 장부는 15년으로 한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나는?

○윤주경 위원 다르잖아. 다르니까 다르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박재호 위원 다른 자산하고 다르니까.

○소위원장 김종민 금융위는 이게 이해가 가나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오기형 위원이 제기한 것은 10년, 15년 이게 아니고 보관 업무가 상법으로 제너럴하게 돼 있는 것을 이것만 특별하게 15년으로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게 문제 제기인데 그건 좀 일리가 있지 않을까요?

○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 박민우 그 말씀 입법정책적인 판단일 것 같은데요. 지금 박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굉장히 탈세의 우려라든가 불법자금 거래와 관련해서 거래기록을 좀 더 장기 보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좋습니다.

하여간 이 의견에 위원님들 다른 이견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기형 위원 그건 비용 부담 문제니까요 만약 사회적으로 비용 부담을 사업하는 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연장 가능하다 이렇게.

○소위원장 김종민 그런데 그건 지금 우리가 빨리 판단을 해야지. 오늘 이것을 통과시켜야 되는 데.

○이용우 위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표에 보면 현행 상법 33조의 상인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보관하는 게 굉장히 물리적인, 법상 10년

은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용진 위원도 그렇고 저도 아는 게, 금융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장부 보관이라고 하는 건 요즘 거의 다 전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라고 하는 게 추가적으로 들지 않고 현재 금융회사들도 대부분 10년 이상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소송을 당했을 때, 고객하고 소송을 당했을 때 스스로 자기를 디펜스하기 위해서 법적인 제척기간 동안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 쪽이나 이쪽은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좋습니다.

그러면 15년으로 일단 하고, 혹시라도 오기형 위원이 그 취지에서 또 중요 근거가 발견이 되면 나중에 법사위 때 가서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오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이상으로 축조심의는 다 마쳤고요.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 보면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 박민우 정말 죄송합니다. 오전에 의결한 사항 중에 급하게 FIU에서 약간 보완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자기발행 코인 거래 제한과 관련해서 기존 안 42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법무부에서 자기발행 코인 거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것 예시를 하나 들어 달라라고 해서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마련된 가상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것을 유틸리티 코인(utility coin)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예시로 넣었는데 이게 마치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발행된 가상자산으로 혹시 오인될 수도 있으니까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이렇게 문구를 좀 바꿨으면……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김종민 예.

부대의견.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부대의견은 지난 1차 소위 때 윤창현 의원님 부칙의 준비행위로 규정돼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 사항들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저희 실에 2건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뒷장에 보면 정리를 해 뒀습니다. 금융위원회하고 해서 다 동의한 사항이고요.

주로 개선방안이나 대책들을 마련해 가지고 상

임위원회에 보고하고서 시행한다 이런 식의 부대의견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이용우 위원 자꾸 얘기하는데, 다 좋은데 6번은 좀……

○윤창현 위원 마음에 안 드세요?

○이용우 위원 아니,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고 규정이, ‘혁신서비스의 출현을 방해하지 않게’ 이게 이 법에, 지금 이게 규제법인데 이 구절이 적합할까 그런 의문이네요.

○윤창현 위원 아까 그 42페이지랑 연결이 돼 있지요, 이게.

○김희곤 위원 규제도 경제나 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규제일 수도 있으니까.

○이용우 위원 규제가 있으면 거기에서 새로운 게 나오지요.

○윤창현 위원 넘어갑시다.

○소위원장 김종민 넘어가요, 그냥?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성주 위원 부대의견의 구속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종민 있지요, 부대의견이. 부대의견도 법이야, 법.

법원에 가면 부대의견이 상당한 효력이 있습니다, 근거 조항으로.

그러면 이견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님, 그러면 아까 그 부대의견 중에 상장 용어는 빼고 기준과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되는, 자율협약이 담보되는 그런 조항을 꼭 포함시켜서 한번 문구 조정을 좀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예, 알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미흡한 거나 부족한 거 없습니까?

○강민국 위원 마지막으로 의견을 말씀하실 것 없냐고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저희 추가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위원님들은 의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혹시 얘기하실 것 없어요?

○이용우 위원 딱 한 가지. 지금 말씀하셨던 부대의견을 오늘 중으로 해서 이것은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부대의견을 정리해서 의결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예, 알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잠깐만요.

1단계로 우리가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2단계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좀 해 놓고, 어떻게 하자 이런 것을 좀 해 놓고 가는 게 안 낫습니까? 2단계도 언제까지 어떻게 하자.

○소위원장 김종민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기가 쉬울까요?

○윤한홍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끝낼 겁니까?

○이용우 위원 아니지요, 아니지요.

○윤한홍 위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예요, 이걸로 끝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소위원장 김종민 일단 의결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의견들을 한번 들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27항까지 이상 19건의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1단계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소위 의결을 했는데요. 이것은 입법 절차를 추진하고 지금 2단계에 관련된 논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게 구속력이 있는 논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1단계 논의가 의결됐으니까 의견 있으신 분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오늘 다 대안 반영으로 이 법안들이 폐기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개정안이 계속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논의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오케이.

그러면 이 법안은 폐기되는 거고 2단계 관련된 법안은 새로 발의를 해 주셔서, 그 발의되는 대로 우리가 논의를 충실하게 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그냥 무작정 뒤로 미뤄 놓자는 건 아니고 발의되는 것에 따라서 논의를 계속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현 위원 2단계는 1단계 개정안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소위원장 김종민 그렇지요.

○박용진 위원 그때는 하여간 금융위원회가 조금

더 해 주세요, 주도성을 갖고. 그것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7건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자료 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하셨습니다.

2쪽입니다.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지금 범용성 요건 폐지 등 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항별로 금융위원회 입장 보고받으시고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 방지 등 선불충전금 관련 소비자 보호의 핵심사항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논의를 통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기를 바라며 추가 논의사항에 대한 금융위 의견을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페이지 선불전자지급수단 범용성 요건 폐지와 관련해서 영세업체에 규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난 소위 논의사항에 동의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행잔액 등의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등록을 면제하는 등 예외 범위를 마련하겠습니다.

등록면제 요건이 되는 구체적인 금액은 업계 실태조사 및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정무위에 사전 보고하겠습니다.

둘째, 3페이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 등록면제 요건 강화 관련입니다.

발행잔액 등이 일정 금액 미만인 업체의 경우 선불업 등록을 면제함으로써 영세업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4페이지 소액후불결제업 여전법 준용 관련입니다.

지난 소위 논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포괄적으로 여전법을 준용하도록 한 조문을 삭제하고 관련 업계와의 의견 조율을 통해 현행 샌드박스 부가

조건 수준의 규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넷째, 선불업자가 보유하는 선불충전금의 운용 방식 관련입니다.

현행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별도관리 예외분 및 지급보증보험 가입분에 대해서도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C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보험사가 선불충전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의 면책조항을 통해 고객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기형 위원 위원장님, 1건씩 그냥 1, 2, 3, 4로 가시지요.

○소위원장 김종민 어떻게?

○오기형 위원 예, 1, 2, 3, 4 하나씩 토론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먼저 1번부터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1번 의견 얘기해 주세요.

○오기형 위원 질의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1항의 등록면제 요건을 실무적으로 미리 토론한 게 있습니까?

○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 박민우 등록면제 요건은 지난 법안소위 때도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적시된 바와 같이 사실 현재의 규율 대상이 아닌 업체들이 규율 대상으로 포섭되어야 되다 보니까 이분들께서 하고 있는 업태를 저희가 감독원을 통해서 자료제출을 요청드려도 잘 협조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발행잔액이라든가 연간 총 발행액 그 규모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영세업체들에 대한 적용 면제조건을 저희가 선출할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일단은 대통령령에다가 그렇게 위임을 하도록 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법이 되면 그분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실 거고 그것에 따라서 합리적인 설정을 한 다음에 국회에 사전적으로 보고를 해서 입법예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오기형 위원 이건 순서가 좀 바뀐 이야기 같은데요. 실태조사가 되고 그 속에서 법에 규정할 것이냐, 아니냐, 일정한 규모 범위 내에서 시행령

으로 위임할 것이냐 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할지에 대해서 여기서 전혀 어떤 가늠도 못 하는데 위임해 달라, 알아서 다 하겠다고 하면 직접 입법하시지 뭇하러 여기다가 이야기를 합니까?

○**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 박민우** 그러니까 지금 말씀 올린 대로 사실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때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요청드렸던 현재 발행규모라든가 발행잔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한 실적을 같이 해서 그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의 어떤 제도 규율 대상이었던 분들이 어떤 기준을 바꾸는 경우에는 보통은 이미 규제 범위 내에 들어와 있었으니까 자료 협조가 잘 되는데 이 범용성 요건 폐지에 따라서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을 보니까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규제 대상으로 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 꺼려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하지를 못하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30억으로, 현재 수준보다 어떻게 가감할지가…… 사실 저희가 그 업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불가피하게 시행령으로 위임된 상황입니다.

○**이용우 위원** 그래서 불가피한 걸 좀 알기는 하겠는데, 정무위에 사전 보고한다고 되어 있지요?

○**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 박민우** 예.

○**이용우 위원** 저는 유예기간 두고 조사해서 정무위에 사전 보고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행령의 기준을 마련한다는 그런 부대의견이나 내용이 들어간다면…… 현실적인 거잖아요, 지금 규제 받기 싫어하고. 그런데 일단 법을 해서 했는데 시행령에 다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정무위에 보고하고 그 보고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령을 구체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취지가 반영되는 건 어떨까 싶네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그다음에 2번 넘어갈까요?
등록면제 요건 강화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번, 여신전문금융업법 준용 이것도 의견 없으세요?

김희곤 위원님.

○**김희곤 위원** 여전법 규제를 포괄 준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후불신용결제를 통한 가계부채 증가

또는 사회초년생 등 주 이용자의 연체 등 부작용 우려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를 고려해서 금융위에서 시행령 개정 시에 전체 전금업자 통합 한도 제한이나 또 회사 개수 제한 등 인당 한도를 좀 제한하고. 두 번째, 과도한 포인트 적립이나 마케팅 과당경쟁 방지 등의 보완책을 좀 마련해서 그것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이용우 위원** 약간 같은 취지인데 입법기술적으로 보면 여전법을 적용하되 예를 들어서 샌드박스의 부가조건을 해서 어떤 걸 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여전법을 적용 배제를 하는 순간 이게 사실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법은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다른 요건에 의해서 할 때는 배제할 수 있는 대통령령을 두고 그 결과를 보면서 하는 게 오히려 기술적으로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희곤 위원** 예, 시행령 개정 시에 좀 반영을 해 달라……

○**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 박민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현재 샌드박스 시행령에서 반영할 부가조건의 주요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용자한도, 총여신잔액 그리고 건전성관리,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이라든가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사항, 이것은 카드사 신용판매와 동일하게 여전법을 준용하겠다는 것과 하는 것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행령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형식적으로는 그럴 겁니다. ‘여전법을 적용한다. 다만 이 조건을 넣고 그럴 경우에는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맞을 거예요.

○**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 박민우** 위원님, 그게 지난번 법안소위 때 사실 그 전에 저희 안이 그랬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너무 포괄적이라고 해서 갖고 이렇게 지금……

○**김희곤 위원** 그래도 이게 너무 과도한 마케팅이나 시장 혼란이나 소비자 피해가 좀 우려되는 게 크니까, 삭제할 경우에.

○**소위원장 김종민**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 선불충전금의 운용 방식. 이게 A안 B안 C안, 3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C안이 금융위 의견이잖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소위원장 김종민**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업계에서는 C안으로 가면 거의 어렵다, 못 한다 이런 의견이라서 최소한 B안까지는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지 한번 의견 주세요. B안, C안을 어떻게 할지만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윤창현 위원** 금융위는 업계랑 상관없이 C안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 박민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한 개 업체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윤창현 위원** 한 개 업체?

○**소위원장 김종민**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 박민우**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한 개 업체가 어느 업체예요?

○**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 박민우** 에스엠하이플러스라고 하는 곳이요.

○**소위원장 김종민** 에스엠하이플러스 그 한 개 업체만 C안으로 가면 어렵다 이런 입장인가요?

○**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 박민우** 예, 거기에 부동산 투자라든가 계열사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그러면 안 되지.

○**윤창현 위원** 그러면 안 되지. 사고 나지, 사고 나.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면 일단 C안으로 가요? 이견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용우 위원** 그 돈 빼 가지고 부동산 투자했다는 소리 아니야, 지금.

○**윤창현 위원** 나쁜 놈이네.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면 전금법은 다 정리된 건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7항까지, 이상 7건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이 법은 행정기본법이 지난 3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쟁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4쪽입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건데요. 인허가 의제 규정과 관련해서 행정기본법의 규정 내용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해서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 등의 의제 기준 및 효과 등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행정기본법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특별한 문제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7쪽입니다.

이의신청 관련해서 지금 공인회계사법 등 11개 법률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과 관련해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를 하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결과통지 기간은 행정기본법을 따르지 않고 개별법의 특례를 그대로 인정하며 개별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를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11개 법률의 세부적인 개정 내용은 하단의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부 수정의견이 있는데요 이것은 누락된 부분을 좀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26쪽입니다.

공인회계사법 등 8개 법률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관련 사항입니다.

개별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을 행정기본법상 용어인 ‘연기’로 일치시키고, 행정기본법 29조 단서에 따라서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서 개별 법률 간에 차이가 있는 분할 납부의 사유를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연기 및 분할 납부의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는 사유를 행정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5개의 사유와 동일하게 개별법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통일성 확보를 위해서 하는 조치로서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다음에 44쪽입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 시행하도록 하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관련해서 적용례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건 행정기본법 시행 전에 법이 제출됨에 따른 관련 사항들이고 이미 시행이 됐기 때문에 관련해서 저희가 법문 등은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의견 얘기해 주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금융위와 관련된 모든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위원님들 의견 얘기해 주세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3항까지 이상 6건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자료 3쪽, 그동안의 심사 경과를 간략히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6건의 보험업법 법안의 주된 내용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입니다.

2020년 12월 달하고 2021년 9월에 소위를 개최했었습니다. 해서 개정 필요성과 위탁 대상기관, 의료체계와의 관계 등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어서 논의가 중단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정 사항별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의 전산화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개정안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대리인이 실손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요양기관에 의료비 증명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서류 요청 주체라든가 서류의 내용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쪽에 보시면 실손의료 청구 간소화 도입 여부와 관련해서는 의사·병원협회하고 보험협회 쪽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6쪽, 7쪽에 정리를 해 놨습니다.

8쪽, 만약에 청구 절차를 간소화한다면 그것을 전제로 한 통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 어떻게 보고를 드릴까요? 아니면 보고 다……

○오기형 위원 약간 보고를 해야지요.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한다면, 통합의견으로서 먼저 1항 요청의 주체 및 서류 전송의 방식입니다.

각 개정안의 공통적인 내용을 반영해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대리인을 서류 요청의 주체로 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요양기관은 이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통합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요청 대상 서류는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전송하여야 하는 정보에는 환자의 민감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송의 대상이 되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직접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통합의견을 작성했고요.

세 번째로 의료법 제21조 및 약사법 제30조의 적용 배제와 관련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는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약국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배제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각 개정안은 환자의 의료정보 전자적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8쪽의 통합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스템 구축·운영 및 비용과 관련해서 각 개정안의 공통적인 내용을 반영해서 보험회사로 하여금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관련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업무 협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요.

세 번째로 전문 중계기관은 자료 축적 없이 자료 전송의 단순 통로로 기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제출 요청권은 불필요하다는 금융위원회 의견을 반영해서 통합의견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

다.

다음 쪽입니다.
논의사항으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사무 수탁기관과 관련해서 보험협회 쪽이랑 대한의협 쪽에서 참여하게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표를 보시면 맨 우측에 금융위의 통합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서 논의하시면 되

겠습니다.

개정안은 비밀 누설 금지 목적 외 사용·보관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통합 의견을 말씀드리면 각 개정안의 공통적인 내용을 반영해서 비밀 누설 금지를 규정하고 업무 외 사용·보관 금지는 개정안이 기관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보·자료 업무 외 용도 사용·보관 금지의무 대상을 '전산시스템의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수정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논의 사항으로서 보험계약자 등의 동의를 받은 관련 서류 업무 외 용도 사용과 관련해서 배진교 의원안은 심평원이 보험계약자 등의 동의를 받아 요양기관으로부터 받은 서류를 다른 업무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한의협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31쪽입니다.

부칙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지금 이게 그동안에 논의가 쪽 돼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 이력에 기초해서, 윤창현 위원님이 나름대로 이 위원회의 임무를 받아서 검토한 결과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의견 좀 얘기해 주세요.

○윤창현 위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게 자료 전송대행기관, 보험개발원 산하에다가 두는 걸로 그렇게 해서…… 여기 몇 페이지지, 이게?

○소위원장 김종민 그런데 그게 심평원이 아니고 제3기관으로 가면 또 극력 반대하는 위원들이

있어요.

○윤창현 위원 글썄요. 그것만 논의하면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김종민 심평원은 모르겠지만 제3기관으로 가는 건 안 된다.

○윤창현 위원 그래도 심평원에 대한 의협과 의사들의 거부감이 굉장히 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소위원장 김종민 물론 반대가 있으니까.

일단 위원님들 의견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자료 19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질문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간소화하게 되면 병원 진료기록이나 이런 게 보험회사로 전자 파일로 넘어갑니까?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 신진창 금융위 산업국장입니다.

지금은 서류 형태로 전달이 되고요.

○윤한홍 위원 지금은 각 보험 가입한 사람이 서류를 가지고 와서 신청하잖아요, 보험회사에?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 신진창 예, 서류를 내거나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냅니다. 그리고 일부 대형병원에서는 전자적으로도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는 비율이 1% 이하입니다.

○윤한홍 위원 병원에서 전자파일을 보험회사로 직접 보내 주는 경우가 지금도 있습니까?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 신진창 있습니다. 삼성병원이나 이런 큰 병원에 가면 키오스크가 있고요. 거기에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체 의료기관이 10만 개인데 그런 식으로 전달이 되는 건 1% 정도고요.

만약에 이게 활성화가 되면, 추정하는 것에 따라 다르지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게 불편해 가지고 고객들이 청구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2000억에서 3000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전산화가 돼서 소액의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 20만 원 이하의 실손청구를 건별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5만 원 이하의 비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불편하니까 고객들이 보험회사에 청구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2000억에서 3000억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이게 간소화가 되면 2000억이나 3000억을 고객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2000억 내지 3000억이, 국민들에게 처

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윤한홍 위원**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세요.

그러면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이유가 뭐지요? 그걸 방금 그런 식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 신진창** 의사협회에서 반대했던 것은 윤창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걸 중계하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중계하는 기관이 그간에 심사평가원이 거론이 됐거든요.

그런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것은 우리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병원들이 진료비를 급여 청구했을 때 심사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의료계에서는 이 중계기관이 심사평가원이 되면, 실손보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본인이 부담하거나 국가가 케어해 주지 않는 비급여 부분을 실손보험이 커버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들여다보고 결과적으로 병원의 진료비 청구에 있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입할 수가 있다는 염려를 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를 했던 것이고요.

그간에 저희가 정무위 소위 이후에 지난가을부터 십여 차례 회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의료계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은 심사평가원만 아니면 된다, 그러면 보험개발원이면 되겠느냐, 보험개발원도 사실상 대외적으로는 반대는 안 한다.

그러나 법에서 보험개발원이라고 쓰는 것은 의료계 내부의 대화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적절치 않고 대신에 보험개발원이라는 게 드러날 수 있게, 수석전문위원 통합 의견에 반영이 돼 있는데요. 공공성, 보안성,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해 주는 것, 그렇게 하면 사실상 보험 관련해서는 그런 기관이 보험개발원입니다. 그런 정도의 경우에 정무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반대하지는 않겠다라는 게 저희가 여태까지 조정해 온 내용입니다.

○**윤한홍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박재호 위원님.

○**박재호 위원** 참 오래됐지요, 이 논쟁이?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 신진창** 예, 그렇습니다. 2009년 이후로 14년 됐습니다.

○**박재호 위원** 전부 다 이해관계 때문에 막 이러다가 국회도 흔들리고 또 관에서도 그렇고, 소

비자 입장에서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들어도 5만원 이하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요, 더 큰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보험에 도수치료 이런 것 엄청나게 하고.

이런 비급여가 어디서 생겼겠어요? 그게 보험 관련해서 의사들하고 여태까지 해 왔던 관행적인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한 단계만 나아가자, 심평원에서 하면 반대도 많고 또 이러니까, 우선 입법이라는 게 완전히 무슨 한 방에 되는 게 아니라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보험개발원에서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제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전산 청구에 미참여한다, 요양기관에서 안 하겠다 이러면 어떤 강제를 하는 수단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 신진창** 오늘 소위 심사자료에 있는데요. 그 경우에 강제력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안도 있었는데 저희가 의료계하고 대화하고, 물론 입법 사항이기는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 정도를 그리고 제도의 첫발을 내딛는 데 있어서 시작은 자발적인 협조에 기초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석전문위원 준비하신 소위 심사자료에는 처벌 조항은 안 넣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호 위원** 그러면 참여 안 해도 아무 관계 없네요?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 신진창** 그러나 고객이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 병원에 가면 다 전산 청구를 하는데요……’

○**박재호 위원** 에이……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 신진창** 그러니까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시고 강제력도 두어야 된다고 그러면 일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처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질의할게요.

지금 좀 잘 보셔야 될 게, 요즘 병원에 한번 가 보십시오. 실손보험 청구 전산으로 해 줍니다. 핀테크 업체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게 그 핀테크 업체가 해 주면서 쌓았던 개인정보를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이것 사적으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어떻게든 보험개발원이든 공공적으로 해서 공공에서

개인정보 보호 의무는 같이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만약에 이걸 계속 이 상태로 두게 됐을 때 그 정보가 몇몇 업체에게 독점이 되고 다른 식으로 활용됐을 때의 문제 같은 것들을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기 때문에, 이 법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의사들의 불신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보험개발원이라는 어떤 형태로 해서라도 일단 시행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윤창현 위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희곤 위원 저도 이용우 위원님 말씀에 찬성인데요. 그동안 15년 끌어 왔던 이유가 진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사들이 심평원에 대한 불신 때문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 왔는데 한 발짝 지금이라도 나아가고 과태료 부분은 추후에 하더라도, 지금 한 발짝 나아가는 게 어렵지만 이렇게 어렵사리 의사협회에서도 좀 양보를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재호 위원 의사가 양보한 게 아니고 국민이 양보했지.

○김희곤 위원 어찌 됐든, 어찌 됐든.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 신진창 예, 그렇습니다. 물론 박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이용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 보험개발원 정도의 공공성 있는 기관으로 해서 총괄을 하고 이 법에는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엄벌하는 조항도 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재호 위원 그러면 금융위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의료계하고 의사협회하고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청구 전산화 협의체 이런 것도 구축해서 그렇게 함께 좀 하면 빨리 될 수 있을 테니까……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 신진창 예, 그렇습니다. 그간에도 8자 협의체라고 해서 복지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협의를 해 왔고요. 지금 소위 심사자료에 있는 것에 보면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해서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동수로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화를 해 나갈 것입니다.

○박재호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용우 위원님이나 다 마찬가지로, 핀테크 업체도 이런 걸 해요. 그런데 이게 의사협회가 반대하든 어디가 반대한다고 안 가는 것 아닙니다. 가는데 가능하면 공익적인 목적으로 빨리 가기 위한 노력을 의사협

회나 모든 의료 그쪽이나 보험회사나 이런 걸 안 해 주면 나중에 이것이 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시대의 변화를 빨리빨리 따라가 주는 것이 필요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해 주는 게……

○윤창현 위원 운영기관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전송대행기관의 운영주체……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 신진창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위원님, 저희가 의료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원래 중계 역할을 하는 기관을 여러 법안에서는 중계기관이라고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중계라고 하면 적절치 않고 이 중계하는 기관은 전송을 대행하는 것으로만 한정을 해라, 그래서 중계기관 대신에 전송대행기관이라고 이름을 쓰면 수용하겠다는 얘기도 해서 통합 의견에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윤창현 위원 전송된 기관의 어떤 운영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 신진창 그렇습니다.

○윤창현 위원 거기에다가 소비자 단체도 좀 넣지요.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 신진창 보험업계와 의료계는 동수고 그다음에는 구체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비자 단체, 학계, 전문가 이렇게 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윤창현 위원 추가합니다.

부대의견에다 좀 넣어 주십시오.

○이용우 위원 사실 소비자 단체 넣으면 의사협회가 싫어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 가지고.

○윤창현 위원 의사들의 의견을 또 반영을 하고……

○박재호 위원 의사 의견도 듣고 소비자 의견도 들어야 되니까.

○오기형 위원 다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 신진창 22쪽에 운영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요.

○윤창현 위원 22쪽?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 신진창 예, 법안입니다. 22쪽 통합 의견에 있습니다.

4항입니다. 2항에 따라, 그러니까 전송대행기관이라고 하는 것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운영 이것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동수 구성에는 합의를 했고요. 그다

음에 그 밖의 사람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윤창현 위원** 오케이. 드디어 되네.

○**소위원장 김종민** 위원님들 말씀 다 하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지금 이 법에 대해서 우리 김성주 위원님이 강한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시는데 잠깐 지금 나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통과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급거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고 하니까 의결 여부를 떠나서 일단 반론은 한번 들어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윤창현 위원** 어떤 반론이신가요?

○**소위원장 김종민** 어떤 반론인지 좀 들어 보려고.

그러니까 요지는 이겁니다. 심평원이 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것을 다른 제3기관으로 맡기게 되면 공보험과 사보험 간에 통합체제로 향하는 근본적인 큰 방향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 그 점에서 뭔가 고려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건강보험 정책 기반의 판단입니다.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 신진창** 위원장님,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김성주 위원님께 설명드렸을 때도 김성주 위원님께서서는 심사평가원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국민 편의를 위해서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제시하는 지금 법안이 전문대행기관, 전송대행기관을 표현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공공성, 보안성, 전문성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그렇게 의결을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심사평가원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저희가 의료계하고 대화해 온 내용은 보험개발원을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일단 이렇게 합시다. 이것 김성주 위원님 오시면 간단하게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한 수용 여부를 오늘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고, 일단 다음 안건을 처리하고 김성주 위원 오시면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이것은 일단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고요.

의사일정 제34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법률안 주요 내용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자료 1쪽에 지난 3월 28일 소위에서 심사한 결과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였고요. 다만 연체이자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제출한 개인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병합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2쪽에 보시면 박홍근 의원안하고 정부안 비교가 돼 있고요. 3페이지 이하에 지금 사항별로 금융위 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입장 보고받으시고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얘기해 주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저희 자료에 요약이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용어 관련해서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실무에서 연체료 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일반 국민 입장에서든 지연손해금에 비해 연체이자라는 표현이 이해가 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연체이자 사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입법 방식 논의 사항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금융상품 판매 단계를 규율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보다는 대출 연체 이후 전 과정을 규율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연체이자 관련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고 연체 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통합적 규율 차원에서 제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적용 대상 채권의 범위입니다. 분할상환대출과 일시상환대출을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적고 일시상환대출에 보호 필요성이 큰 소액·신용대출이 많이 포함되는 점을 감안해서 일시상환대출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금액 제한 관련해서는 3000만 원으로 설정하여도 상당수 채무자 73% 정도가 적용이 되어서 채무자 보호 효과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고, 금액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큰 부담을 지게 되는 금융회사가 대출금리를 인상하여 소비자 비용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고액 대출자가 고의로 대출을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3000만 원 기준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채무자와 관련해서는 법인채무자보다 개인채무자를 채권자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법인채무자에 대한 연체이자까지 감액 시에 금융회사 부담이 커져서 이것이 대출자의 이자 부담에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채무자 관련 사항은 금융소비자법에서 규정할 경우 연체잔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상호금융권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대출채권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상호금융과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제정안 방식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위원님들 얘기해 주세요.

3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금융기관 부담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 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확인했나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유재훈 채무자보호법 다음번에 논의할 것에 들어가 있는데요 따로 저희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빨리.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유재훈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경우 연체이자 제한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에 대응하여 가산금리가 0.02~0.03%p 상승 소지가 있습니다. 금액 기준 철폐 시 3000만 원 미만 채무자의 가산금리는 0.06~0.18%p 오를 것으로 보이고 3000만 원 이상 채무자는 0.01~0.02%p 상승이 추정됩니다. 이유는 3000만 원 이하의 연체 규모가 3000만 원 이상의 4배입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이하의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거고요.

박홍근 의원안에는 일시상환대출이 빠지고 상호금융이 빠지기 때문에 3000만 원 미만 채무자의 가산금리가 0.04~0.12%p, 3000만 원 이상인 차주는 0.01~0.02%p 상승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표를 보시면, 정부안 3000만 원을 기본으로 봤을 때 금융회사의 수입이 1265억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5000만 원으로 하면 1528억, 7000만 원으로 하면 1713억, 1억으로 하면 2033억, 만약에 개인채권을 전부 포함한다면 4710억 정도의 금융회사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마지막의 박홍근 의원안이 2377억 원으로 많이 줄어드는 이유는 법인채권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분할상환채권만 포함이 되고 상호금융이 제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 얘기해 주세요.

○윤한홍 위원 질문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됐을 경우에 가산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보고를 한 거지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유재훈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오를 건지를 저희가 한번 추정을 해 본 겁니다.

○윤한홍 위원 왜냐하면 금융기관의 수익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결국은 연체 가능성이 있는 분을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연체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가산금리를 물게 된다 이런 말을 해도 될까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유재훈 그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3000만 원 이하하고 3000만 원 이상을 해 보니까 3000만 원 이하 채권자가 3000만 원 이상 채권자에 비해서 연체가 4배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만약에 가산금리가 오르지 않는다면 3000만 원 이하 채권자가 오히려 혜택을 많이 보는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러니까 평소에 연체 없이 거래를 잘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가산금리를 물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 그 말이지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유재훈 예, 그렇습니다. 약간은 그렇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게 부작용이네?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유재훈 예.

○박재호 위원 제가 한번……

○소위원장 김종민 의견 얘기해 주세요.

○박재호 위원 어쨌든 이걸 가상인데 ‘금리가 좀 오를 것이다’, 그러면 만약에 개인 전체를 하면 4710억 원. 그러면 그게 금융기관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데요? 나누면 얼마 안 되잖아?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유재훈 하나로 하면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재호 위원 한 금융기관에, 예를 들면 한 지점에?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유재훈 한 회사, 금융회사.

○박재호 위원 한 회사에.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유재훈 예.

○박재호 위원 한 회사에 이천몇백만 원인데 이게 금리가 오를 정도의 요인이 되나?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유재훈 다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3000만 원 이하 채권자의 연체율이 높다 보니까 금융회사가 적용을 할 때 소액 채권자에 대해서 금리를 조금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액 채권자들은 사실 연체율이 낮기 때문에 고액 채권자에 대해서는 조금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소액 채권자에게는 지금도 소액 채권자나 신용대출을 할 때, 소액을 신용으로 빌리면 조금 금리가 높거든요. 그런 게 조금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행동이 변하는 거니까 저희가 예상인 것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입니다.

○오기형 위원 금리 관련해서 계속 금융위원회, 금융 당국에서도 내부 반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저는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게 잘못, 이전 논의가 일면적으로 이 제도 도입하면 비용 커진다 이런 식으로만 논리를 호도할 것 같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금리 시대 때 다 변동금리 80% 그래 놓고 금리 인상하니까 다 몰라라 하고, 은행 나 몰라라 하고 그다음에 금융위 관계자들 다 나 몰라라, 그러다가 사람 피눈물 나고 있지 않습니까, 올 하반기 더 피눈물 나고 있고.

그 당시에다 딱 이런 식의 논리였습니다. 저금리 시대 때 고정금리 하면 그게 당연히 미래 리스크로 남기 때문에 ‘금리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저금리를 해서 소비자가 선택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조장하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거의 그런 수준에서 이 제도 논의를 접근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금융 당국 반성할 게 많다, 이 주제에 대해서 접근의 시각을 바꾸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와 별개로 잠깐 제도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단순 의문 사항입니다, 정책 입장이 아니라. 3번하고 4번 정도에서 지금 논의가 계속돼야 될 것 같은데, 3번에서 일시상환대출과 그다음에 분할상환대출의 차이점 해서 분할상환의 경우에 분할상환분을 연체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제한토록 하자는 게 제도의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일시상환의 경우에는 그런 개념이 적용

이 되는가? 일시상환과 분할상환을 구분해서, 일시상환이면 한꺼번에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용어 자체가 의미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유재훈 제가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0만 원을 빌렸는데 한 달에 예를 들면 이자를 10만 원씩 내기로 했다, 그런데 제가 첫 달은 10만 원 내고 둘째 달은 10만 원 못 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한 달이 넘어가게 되면 2000만 원에 대해서 기한이익이 상실돼서 세 번째 달부터는 2000만 원에 대해서 연체이자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못 낸 이자가 10만 원이니까 10만 원에 대해서 연체이자를 내는 겁니다, 다음 달은 20만 원에 대해서 연체이자를 내는 거고, 2000만 원 전체에 대해서 연체이자를 내는 게 아니라.

○오기형 위원 여기서는 그러면 용어 정의 문제네요. 용어 정의에서 원금 분할상환이 있고, 이자는 몇 년 동안 유예하면서 이자만 냈다가 나중에 원금을 일시상환하는 경우에 그 이자를 납부하는 기간 동안에 그 해당 지연된 부분의 이자에 대한 지연이자만 부담한다 이런……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유재훈 예, 그렇습니다.

○오기형 위원 용어 자체만 정리하면 되는 거네요. 그건 개념적으로 다 동의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유재훈 개인채무자 보호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기형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나오는 것은 3항이 정리가 되면 4항이나 또 3항에 나오는 것 중에서 그다음 부분이 3000만 원이 적절하냐 안 하냐 이 주제가 계속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 이 수치만 가지고 이게 3000만 원 미만이 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과한 것 아니냐 싶습니다. 이게 우리 의사결정의 기본, 의미 있는 데이터인가 의문이 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유재훈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3000만 원이 무슨 금과옥조나 논리적 이유가 있는 액수는 아니고요. 저희가 3000만 원을 한 이유는 첫 번째, 연체이자 부과의 주된 목적은 채무자 상황을 유도하기 위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0만 원을 계산해 보니까, 3000만 원이 대부분 신용회복위원회 대부분의 채권자가

3000만 원 이하고 소액사건심판이 3000만 원이고 3000만 원을 근거로 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했고 그게 73% 정도 커버가 된다고 생각해서 한 거고.

그리고 3000만 원을 빌리는 층이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연체이자자가 많아지면 오히려 더 빚을 못 갚게 되고 오히려 채무가 더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모든 소득한테 다 더 주면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대출금액이 큰데 소득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체이자자는 일종의 상환 의지를 강제하기 위한 건데 그런 사람들이 한두 달 연체해도 되지라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장이 저희가 법안을 만들면서, 그런 게 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런 주장이 있어서 금융회사의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3000만 원으로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호 위원 금융회사 의견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돈 있는 사람이 연체를 해요,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하는데? 있는 사람은 더 아끼려고 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이 중산층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5000만 원 이하로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게 전체 해도 한 금융기관당 그것뿐이 안 든다는데 그것을 가지고 금리가 오른다는 변명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2억을 빌렸는데 갚아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새는 경기가 어려워져서 한 몇 달 못 갚았다 그러면 여태까지 전체에 그것을 붙였다면서. 그것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자체도 잘못된 것을 국민들한테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이때까지 한 것을 헌법소원 내서라도 도로 돌려줘라 할 거예요. 그런 것을 좀 바로 하자는 건데.

○소위원장 김종민 위원님들, 잠깐, 우리가 이것 지금까지 몇 번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 번 유예한 이유가 실제로 이게 선의의 피해자의 정도가, 피해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자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0.02 금리 상승에다가 최대가 0.09니까 전체로 했을 때 0.07 정도, 0.05 정도를 평균값으로 보고 그 정도의 부담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담이, 사실은 이 법안 자체의 취

지는 아주 합리적인 거거든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순리에 맞는 건데 이 순리에 맞는 법을 막을 정도의 부담인지를 한번 측정을 해 봐야 되는데 1년에 0.05 가산되는 정도가 소비자에게, 그게 약간 돈 많은 사람한테 간다고 해도 그게 이런 순리를 막을 만한 이유가 된다고 보시나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유재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무슨 원리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법안을 만들다 보니까 여러 이해관계자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랬고 여태까지 관행이 있고 관행을 바꾸는 거니까 한 방에 바꾸는 것보다는 순차적으로 바꾸자라는 논리인 거고요.

저희 정부 측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했고 한 방에 바꾸기보다는 순차적으로 바꿔 나가자라는 거였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이것은 입법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입법적으로 어느 방향이 옳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반대할 논리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좋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위원님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고 빨리 결정을 합시다.

○윤한홍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려운 사람 보호하자 하는 뜻에서 법을 냈다는 취지는 동의를 하거든요. 하는데, 시장에서는 예측치 못한 부작용이나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할 수가 있다. 왜? 임대차보호법이 그런 거거든요.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 더 어렵게 했다는 과거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정상적인 대출을 갚아 나가는 사람한테 금리가 전가된다, 그리고 연체가 있는 사람들은 은행에서 자기들 수익 감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한테 대출을 더 안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반응도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굳이 하고 싶으시면 소액으로 해 보고 시장 반응을 점검해 가면서 확대하는 것이 맞지 그냥 이것을 가지고 서로 감정적으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다. 그것을 고민……

○소위원장 김종민 윤한홍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들만 먼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윤창현 위원 저요.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다 동의해요?

○윤창현 위원 처음에 소액부터 하는 것에.

○소위원장 김종민 자, 그러면 만약에 그런 의견이시라면 제가 약간 조정안을 한번 제안해 볼게요.

여기에 이 통계를 우리가 원한 이유가 사실 측정을 해 보기 위함인데 실제로 3000만 원이 금리 상승이 0.02%p예요. 1억이 0.04입니다. 전체를 했을 때 0.09니까 조금 많이 차이가 나는데 1억까지만 해도 0.02 정도밖에는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이자수익 감소액수도 1억에서 전체로 될 때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부작용의 정도가 1억까지는 크지가 않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보면. 그러면 1억 정도를 일단 먼저 시행을 해 보고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판단해 보는 게 어떨까요?

○박재호 위원 좋습니다.

○윤한홍 위원 1억이 소액이 아니잖아. 대액이지.

○윤창현 위원 그런데 이게 완벽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틀릴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생각을 지금.....

○소위원장 김종민 아니, 다른 근거가 있어야지.

○윤창현 위원 아니아니, 어떤 반응이 나올지 좀 보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3000만 원으로 하고 별일 없으면 확대해 나가면 되는 건데.

○소위원장 김종민 여기 자료를 보면 3000에서 1억까지의 다른 큰 변수가 없어 보인다는 거지요.

○윤창현 위원 아니, 이것을 가지고는 그런데 무슨 또 다른 일이 생길지 그것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면 아예 이 입법을,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으니까.....

○윤창현 위원 아니, 취지가 좋잖아요.

○윤한홍 위원 저는 금융위원회의 3000만 원에 동의를 하는 이유가, 1억 정도를 대출받을 정도면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유재훈 저희의 입장은 일단 이게 제도가 바뀌는 거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에 또 위임을 해 놓거든요. 3000 이상으로 해 놓고 시행령에 위임을 했으니까, 저희가 3000만 원으로 해 보고 어느 정도 제도가 안착되면 최대한 빠른 속도로 금액을 올려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아니, 1억 정도를 빌려 가지고 연체를 할 정도면, 나는 그 정도까지 법률로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게 맞는 건지.....

○소위원장 김종민 아니, 이것은 누구든지 해야 되는 거야.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윤한홍 위원 그러니까 시장의 반응을 보고 해야지. 지난번 임대차보호법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이렇게 하면 대출 안 돼. 어려운 사람 대출 못 받아요.

○소위원장 김종민 그것은 아니라니까 그러네.

○윤한홍 위원 안 그래.

○윤주경 위원 그리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제도를 함으로써 이자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부실이 덜 남으로써 오히려 리스크 면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여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 보고 그것을 다 확인한 다음에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소위원장 김종민 자, 잠깐만요.

이 법은 지금 취약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그냥 이자계산 방식이 잘못돼 있으니까 시정하자, 이게 이 법의 취지예요.

○윤한홍 위원 계산 방식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소위원장 김종민 아니, 잘못된 거예요, 지금까지 연체이자 방식이.

○윤한홍 위원 아니, 그것은 잘못된 거지.

○박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자를 이때까지는 은행 위주로만 잘못되게 가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바르게 하자는 건데 3000만 원~1억까지 나왔으면 중간 한 7000만 원으로 해서 정리를 하지요. 왜 그러냐면 그래도 얼마 차이가 안 나니까.

○오기형 위원 이 제도적 취지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 상대방 사이에서의 협상력이 대등하면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인들 사이에서 하는 것에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은 상식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개인과 은행 사이에서 할 때 개인이 협상력이 있는 게 아니라 약관으로 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상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좀 과도한 것은 풀어줄 방법들이 아이디어로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개인의 부분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적절하냐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조금만 하려면

차라리 1000만 원으로 하고 500만 원으로 하지 왜 3000만 원이냐, 그 기준이 없다 저는 그 지적을 하는 거고. 기왕에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좀 넓혀 봐도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구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데이터 중에 이 금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맞냐, 오히려 다른 부작용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 논쟁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일방적으로 특정 제도가 절대적으로 옳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금융위에서 3000만 원 나오고 거기에 맞는 데이터, 숫자 만들어서 여기에 덜렁 주면서 3000만 원이라고 이렇게 하면 논의를 너무 왜곡한다.

지금까지 한은에서 계속해서 변동금리 이야기 하지만 금융위에서 금융정책에 대한 금리정책이 정말 무책임하다, 누구 입장에서 하는지 모르겠고 계속 은행들의 로비받아서 은행의 입장만 대변하는 식으로 왜곡, 오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계속 그런 오해가 들어요.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삼천억 정도의 비용 감소는 감내하겠다고 한다, 거기에 맞춰서 결과적으로 이게 나온 것 아닙니까? 처음에 그렇게 설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라.

이 지점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방법적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두 번 정도 연체하면 그러면 전체에 대해서 책임지게 한다든지, 그런데 한 몇 번 정도를 융통성 있게 풀어 가게 하는 아이디어를 개선해야지. 이 금액으로 해서 꼭, 은행들의 입장에서 바로 직통 대변 이러면 안 된다.

○윤창현 위원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시는 것은 좀……

○김희곤 위원 저도 한마디만 하먼요.

이 법안 취지나 여러 가지 부작용, 저도 은행들이 지나치게 탐욕스럽고 또 약한 사람들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아니라는 지난번 대정부질문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과도하게 금융권을 그렇게까지 몰아붙여서 ‘너희는 손해를 봐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찌 됐든 이 법의 취지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절충을 해서, 제 생각은 아까 금융위에서 말씀하신 이왕 대통령이 시행을 유보해 났고 거기서 순차적으로 또 금융이라는 게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은행이 꼭 금리를 그렇게 올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워낙에 국제적인 상황이 나빠지면 또 연체율이 늘어나면 어쨌든 은행은 또 가산금리를 올릴 겁니다. 이래서 그것은 수익을 내기 위한 은행구조로서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금융위에서 제시했듯이 우선 좀 낮은 데서부터 시행을 해서 점차적으로 속도를 빨리 하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0, 7000 이렇게 시행령으로 좀 올리는 것을 부대의견이나 아니면 다른 쪽을 제시해서 빨리 시행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상입니다.

○이용우 위원 제가 명확하게 할 게 하나가, 이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게 아니고요. 자연이자 산정방식의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가는 겁니다. 일단은 그것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 3000 이렇게 산정하는 것 저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위원장 김종민 일단 지금 이용우 위원님 말이 정확한 말씀이고 이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입법 취지를 감안한다면, 이게 처음에 금융위가 기본적으로 말귀를 잘못 잡은 거예요. 이게 뭐 취약차주 어찌고 하고 소액차주 이렇게 얘기를 시작해 버리니까 복잡해진 거고.

○윤창현 위원 그러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윤주경 위원 그러나가 중요해요.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나가 있어요?

○윤주경 위원 예, 그러나가 있었어요.

○이용우 위원 저는 금액을 어떻게 정하지는 못하는데 조금 더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은행에 있었기 때문에, 가산금리를 은행이 임의로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연체율과 부실률, 부도율이라든지 확률에 의해서 부과하는 거고 여기에 계산된 것은 아마 그런 것을 가지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은행이 임의적으로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면 은행의 자의성을 자꾸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다르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 같은데 한 5000에서 시작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김희곤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선이면 뭐……

○강민국 위원 그렇게 합시다.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면 5000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부대의견에다가 ‘시장 상황의 부작용을 검토해서 순차적으로 정상화한다’ 이런 조항을 집어넣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통과시키지요.

○윤한홍 위원 거기다가 이것 시행하고 6개월 후에 결과 보고를 하고 그것을 다시 점검해서 논의하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종민 예, 좋습니다.

○윤한홍 위원 시장 변화를 보고하라고, 6개월 간격으로.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유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박홍근 의원안은 보류를 해주시고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박홍근 의원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 상환하고 상호금융이 빠져 있으니까 보류를 해주시고 개인채무자보호법을 논의하면서 필요하면 박홍근 의원안을 집어넣는 것으로 해 주시지요.

○이용우 위원 이것 제정법이잖아.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예.

○소위원장 김종민 시간이 없어, 지금. 다음 법으로 넘어갈 시간이 없어.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유재훈 그런데 박홍근 의원안 내용을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호금융이 자동적으로 제외되기 때문에 상호금융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홍근 의원안으로 할 때는. 그래서 다음번에 논의하시더라도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쟁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금방 논의될 수 있습니다.

○오기형 위원 다음 달에 한 번 더 하지요.

○윤한홍 위원 다음 달에?

○김희곤 위원 이것은 천천히 한번 더 해야 돼요.

○소위원장 김종민 하기야 이것 27일 본회의에는 못 올라가겠구나, 진짜.

○윤한홍 위원 다음에 해요, 그러면.

○소위원장 김종민 오케이.

그러면 35항하고 같이 합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러면 다음 주에 법안1소위를 한 번 더 해야 되네요?

○소위원장 김종민 예,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아까 보험업법 그것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보

훈처법 한 30분 하고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윤한홍 위원 시간이 없어. 5시 10분인데 다음 주에 해요.

○소위원장 김종민 그것 하나는 해야 돼. 하루 종일 기다려서 안 돼.

○윤한홍 위원 다음 주에 해요. 다음 주에 1소위에 한 번 더 해요.

○소위원장 김종민 오늘 수정안 들어 보고 일단 의견 한마디라도 얘기하고 끝내자고. 그 정도는 해 줘야지. 내가 5시 반 전에는 끝낼 테니까.

보호업법에 관해서 김성주 위원님.

○김성주 위원 이 법에 대해서 오랫동안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무위에 들어와서 사실은 처음 이 법을 놓고 의견을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입법 취지, 그러니까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자 편리하게 하자 이 명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겁니다. 다만 이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을 염두에 둔 어떤 특정한 영역들이 있고 또 그런 이유 때문에 반대하는 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보험사에 대한 요구로부터 시작을 했고 의료계 반대가 있어 왔던 그런 법이었지요.

저는 이 법을 우리가 볼 때 단순하게 국민의 청구를 편리한다라고 하는 그 이면에 들어 있는, 어떻게 하면 의료비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 주는 방향으로 제도화될 것인가가 저는 더 핵심적 본질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건강보험에 지불하는 보험료가 세대당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보다 3배가 많은 보험료를 민간의료보험에 지불하고 있고요. 그보다 더 많은 액수를 비급여에 직접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삼중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가 사실은 오랫동안 정책적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과 연계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몇 년 동안에 금융위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마 보험사의 강한 반대가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예측하는데 그런 핵심적인 법은 진전이 안 된 상태에서 단순히 청구 간소화만 획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건보와 민간보험의 연계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전체적인

의료비 통제에 대한 것은 놓치고 작은 편리를 통해서 큰 부담을 줄이는 것에 아예 접근조차 못하는 이런 게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 결정하지 마시고, 저는 사실은 심평원을 통해서 간다고 한다면 효과적인 비급여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써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이것이 제삼의 기관을 거쳐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한 부작용을 더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반대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한 번 더 고민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윤주경 위원** 그런데 심평원을 통해서 하면 확실히 소비자가 부담해야 될 보험료가 줄 수 있는 거예요?

○**김성주 위원** 지금은 이렇게 합니다. 지금 현재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는 비급여는 파악이 전혀 안 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비급여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내려나간다 하더라도 풍선효과처럼 그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을 통제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비급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법이, 그게 지금 법인지 어떤 정책인지 시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의사협회가 위헌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심평원을 통해서 가더라도 심평원이 어느 의료기관이 어떤 급여항목을 청구하는 것만 모르게 한다고 하면 충분히 의료계 반대도 약해질 거라 생각하는데, 제삼의 기관을 이용하거나 또는 민간의 핀테크 업체를 활용하는 것들이 장기적인 의료비 통제에 도움이 안 될 거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윤창현 위원** 제가 볼 때 이 법의 목적은 의료비 통제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법의 목적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한 거지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급여를 통제한다고 하는 목적을 만일 달성하려면 의료법이라든가 보험업법 이런 것을 해야지 자꾸 이 법을 하면서 다른 것을 가지고 들어오니 의협에서 반대하고 지금까지 이렇

게 오랫동안 질질 끌었기 때문에 거꾸로 어떻게 하면 빨리 간소화시켜서 소비자들이 보험금 5만원 4만 원짜리도 엔터 키 하나 치면 며칠날 이후에 금방 통장에 딱 입금되게 이게 목적이죠. 다른 목적은 다른 법을 통해서 다르게 해결하자.

금융위의 의견을……

○**소위원장 김종민** 잠깐 한번 들어 봅시다.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 신진창**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평원 문제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의료계의 불신 때문에 도저히 법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공·사보험 연계와 관련된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보험 연계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정부가 공·사보험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고요. 공·사보험 연계에 관한 자료 공유·협의·조정, 복지부와 금융위가 협의해서 제도개선을 해 나가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21년 9월에 이미 제출해 놔습니다. 그 부분은 보험업법 개정안 정부안을 논의하시면서 다시 결정해 나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주 위원** 그것을 왜 정무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논의를 안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니,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중요한 법에 대해서는 논의 안 하고 단순히 그냥 작고 편리한 법은 획 잡니까?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 신진창** 그와 관련해서도 보험업계나 금융위원회는 공·사보험 연계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자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계가 또 완강하게 반대하는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

○**김성주 위원** 의료계가 반대하면 국회는 국민을 위한 입법을 계속 미뤄야 되는 겁니까?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 신진창** 그렇게 해서 미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 생각은 윤창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실손청구 간소화는 간소화를 통해서, 지금 국민들이 더 받을 수 있는 이삼천억 정도의 돈을 안 받고 계시거든요. 간소화가 되면 가장 즉각적인 혜택은 이삼천억 규모의 낙전 보험금이 국민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즉각적인 혜택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김성주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일단은 이것을 통과시키고……

○**김성주 위원** 일단 통과시키면 그다음은 하나도 안 하지, 이제. 공·사보험연계법 안 하지. 더 강한 반대가 있을 때 하겠어요? 작은 이해관계도 못 넘고 맨날 국회가 그것에 따라서 굴복해서 지금 왔는데!

○**윤창현 위원** 아니, 그렇게 소리를 지를 문제가 아니고 2개를 분리시켜야지요. 실손보험 간소화는 간소화하고 공·사보험 연계는 다른 법으로 해서 2개를 분리해서 보셔야지 자꾸 그것을 합쳐서 보시면 안 되지요.

○**김성주 위원** 아니, 더 큰 국민들의 이익을 위한 법에 대해서는 특정한 이익집단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안 하고 작은 편리를 도모하는 법에 대해서는 열심히 이렇게 진행해 가지고 통과시키고. 나는 그게 국회가 해야 되는 본질적인 기능을 방기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김성주 위원님, 우리가 이것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한다는 건 아니니까 그것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면, 그 법을 추진하는 데 저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재검토할 이유가 돼요. 이 법을 통과시키면 그 공·사연계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데 문제가 된다 혹은 장애물이 생긴다 그런 논리라면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선순위 문제라면 일단 이것은 오래 됐으니까 먼저 해 놓고 지금 말씀하신 그 법안을 조속하게 우리가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김성주 위원** 어쨌든 간에 중계기관의 문제로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 말씀드렸잖아요.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하고 의료계가 어떤 기관이 어떤 항목을 청구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기술적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이 법안이 충분히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없는데 제삼의 기관으로 이렇게 피해 나간다고 하면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의료비 통제를 하겠습니까? 정무위가 해야 될 권한이 아니니까 그것은 복지위가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소관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이 문제를 고민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윤창현 위원** 의료비 통제는 이 법의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의료비 통제라는……

○**김성주 위원** 그러면 이 법이 가서 의료비가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생기면 우리

는 그 법의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책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윤창현 위원** 아니, 왜 그게 늘어나요? 늘어나지를 않지요.

○**윤한홍 위원** 저는 그래요. 이 법이 진짜 오래 끈 법인데 아까 전에 위원님들이 모처럼 다 깔끔하게 합의를 했는데 김성주 위원님이 지금 반대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법을 반대하기보다는 또 다른 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신속하게 하기로 하고 이것은 이대로 가는 게 맞지 않아요?

아니, 다른 위원님들도 오늘 진짜 오랜만에 모처럼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그렇잖아.

○**윤주경 위원** 그런데 김성주 위원님, 보험료 자료를 갖다 하는 것을 심평원이 하는 거랑 보험개발원이 하는 것에서 데이터를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보험료를 통합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보험개발원에 있는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김성주 위원** 그게 별도 입법을 통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윤주경 위원** 그것은 입법을 하시면, 여기서 우리가 하면 되는 거지.

○**김성주 위원** 아니, 그렇게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처음부터 심평원을 경유하도록 해야지 굳이 왜……

○**윤주경 위원** 그러데 심평원은 맨날 일이 너무 많대요.

○**소위원장 김종민** 이용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용우 위원** 지금 김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사와 심평원에 대한 불신이라고 하는 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삼의 모’ 이렇게 표현해서 보험개발원이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서 또한 김성주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안에서 사회적 합의가 의료비를 더 줄이기 위해서는 통합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보험개발원이 하다가도, 심평원도 거기에서 배제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논의해서 한쪽으로 이관을 하거나 그다음에 거버넌스 구조에서, 의사 단체에서 거부할 수 없는 거버넌스 단체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통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2단계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저는 김성주 위원님이 제기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의 합의 수준이나 신뢰 수준이 그 정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추후 논의한다는 의견을 달고 일단 이것은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통과시키는 게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이용우 위원님이 얘기하는 불신이라고 하는 게 국가기관이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활동하지 않는다는 불신이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사업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초점을 국민을 놓고 뒤야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단체가 반대한다고 해서 그 반대를 피하기 위해서 계속 입법이 변형돼서 가게 되면 결국은 국회가 국민들의 이익을 어떤 방법으로 지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잠깐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민주주의라는 게 소수 의견대로 결정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소수 의견을 들을 인내는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성주 위원이 한 분이기는 하지만 강한 반대 의견을 갖고 있으니까 다음에 한번 더 논의하고 최종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한번 더 기회를 주고, 김성주 위원님이 동조자를 두세 명 더 규합을 하면 재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보고요. 다음번 심의 때 결정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고맙습니다.

○**윤창현 위원** 다 합의를 봤는데, 이것.

○**소위원장 김종민**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3항까지 이상 6건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위원님들, 의사일정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자꾸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 의견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국가보훈처의 민주유공자법 등 법안 심사가 대기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대기하고 있다가 그냥 가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민주유공자법을 일단 수정안 보고 받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교환해 보고 다음번 논의로 좀 미루고라도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러면 이게 30분 안에는 끝납니다.

○**윤한홍 위원** 안 끝납니다. 각자 이야기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안 돼요. 우리가 다음 주에 하자고 이야기하잖아요.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면 어차피 지금 이 보험업법도 한번 판단해야 되니까요 다음 주에 1소위 회의를 잡고 그때 보훈처법을 먼저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성주 위원** 작은 건 서둘러서 하고 좀 더 중요한 것은 계속 미루고. 너무한다, 너무해.

○**소위원장 김종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한홍 간사님과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일단 민주유공자법은 수정안이 제안돼 있으니까 수정안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를 다음번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이 되면 양당 원내대표 간에 이 법 처리에 대한 합의를 꼭 하도록 그렇게 양쪽에서 노력을 해서 다음번에는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홍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수석께서 지난번에 낸 법안이 수정안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정안을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것을 먼저 의원실에 보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알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수정안이 원법안에서 어떻게 어느 부분이 수정됐는지, 그래야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숙지를 하고 와야 논의가 되지.

○**소위원장 김종민** 민주당에서 정리한 수정안이 있거든요. 그것을 위원님들하고 보훈처에 보내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취합을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예.

○**박용진 위원** 저 30초만 말씀드릴게요.

앞서 계속 보셨겠습니다만 관련 단체의 유가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계시니까 다음에 할 때는 먼저 우선해서 다뤘으면 하는데 그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개별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험업법 개정안이 일명 삼성생명법이라고 하는 법안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미룰 것만이 아니고 양당 간사께서 협의하셔서 소위 공청회 열어서 한 스텝만 나가시지요.

○**윤한홍 위원** 충분히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님도, 우리가 지금 모든 걸 양보 다 하고 있어요. 오늘 회의하신 것 보셨잖아. 그러니

까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박용진 위원 아까 작은 방에서 말씀했던 것. 그렇지요? 예, 감사합니다.

○윤한홍 위원 작은 방 아닙니다, 작은 방 아니고 같은 방.

하여튼 최대한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같이 의논하십시오.

○소위원장 김종민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용우 위원 잠깐만, 이거 부대의견 한번 확인해야 돼요. 이것 위임된……

○소위원장 김종민 부대의견?

○이용우 위원 예.

○소위원장 김종민 그것은 끝나고 나서 해도 되잖아요.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

(「먼저 갑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이고, 방망이 두드리면 나가지 그것을 못 참아 가지고 진짜.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 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강민국	김성주	김종민	김한규
김희곤	박용진	박재호	오기형
유의동	윤주경	윤창현	윤한홍
이용우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
기획조정관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	유재훈
금융산업국장	신진창
자본시장국장	이윤수
구조개선정책관	전요섭
금융혁신기획단장	박민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김병철
감독총괄국장	이창운
디지털금융혁신국장	김부곤
예금보험공사부사장	윤차용
행정안전부조직정책관	한순기
한국은행	
부총재보	이종렬
금융결제국장	이한녕